

<p>제2022-53호 2022년 5월 10일(화)</p>	<p>시  보</p> <p>여수시</p>	<p><b>시 정 지 표</b></p> <p>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168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 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2-17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18
○ 여수시 고시	제2022-1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20
○ 여수시 고시	제2022-181호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고시	12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36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23
○ 여수시 공고	제2022-1376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134
○ 여수시 공고	제2022-1389호	2022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 계획 공고	135
○ 여수시 공고	제2022-139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기동 74-5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140

기 타

회 람								
--------	--	--	--	--	--	--	--	--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6.

여 수 시 장 (인)

1. 결정(변경) 취지

- 여수시 웅천동 1818-8번지 일원, 웅천동 1814-14번지 일원의 구릉지 지형에 적합한 주택건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마목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 변경 조서: 다음
- 3.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 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 4.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I.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II.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III. 용도구역 결정(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IV.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② 공간시설(변경)

③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④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V.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③ 특별계획구역 지정계획(신설)

■ 특별계획구역 건축예시도 : 게재생략

- 건축예시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가능

④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2 : 구릉지주택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3 : 아파트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4 : 테라스하우스 및 타운하우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5 : 지구중심상업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6 : 관광·휴양상업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7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8 :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 9 : 산업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10 :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 별표11 : 건축물 색채계획표(변경없음)

Ⅵ.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 건축예시도 : 게재생략
  - 건축예시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가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00,439	-	2,800,439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1,367,922	-	1,367,922	48.9	
	전 용 주 거 지 역	122,303	-	122,303	4.4	
	제1종전용주거지역	81,315	-	81,315	2.9	
	제2종전용주거지역	40,988	-	40,988	1.5	
	일 반 주 거 지 역	941,196	-	941,196	33.6	
	제1종일반주거지역	407,816	-	407,816	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4,755	-	214,755	7.7	
	제3종일반주거지역	318,625	-	318,625	11.3	
준 주 거 지 역		304,423	-	304,423	10.9	
상 업 지 역	소 계	229,544	-	229,544	8.2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229,544	-	229,544	8.2	
	근 린 상 업 지 역	-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소 계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소 계	1,202,973	-	1,202,973	42.9	
	보 전 녹 지 지 역	375,802	-	375,802	13.4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827,171	-	827,171	29.5	
미 지 정		-	-	-	-	

II.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송현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응천동 1423일원		86,205	-	

III. 용도구역 결정(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	응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응천동 일원	2,800,439	-	2,800,439	

IV.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1. 도 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176	32,143.0	519,397.5	35	7,847.0	114,893.0	73	19,092.0	323,404.5	68	5,204.0	49,376.0	
	변경	177	32,186.0	519,612.5	35	7,847.0	114,893.0	69	19,092.0	323,404.5	69	5,247.0	49,591.0	
일	계	119	28,423.0	454,317.5	24	6,421.0	97,443.0	66	18,359.0	314,068.5	29	3,643.0	42,806.0	
	변경	120	28,466.0	454,532.5	24	6,421.0	97,443.0	62	18,359.0	314,068.5	30	3,686.0	43,021.0	
반 도로	대로	4	5,708.0	171,240.0	-	-	-	4	5,708.0	171,240.0	-	-	-	
	중로	33	12,430.0	195,512.5	6	3,310.0	66,200.0	16	5,852.0	88,306.5	11	3,268.0	41,006.0	
	소로	기정	82	10,285.0	87,565.0	18	3,111.0	31,243.0	46	6,799.0	54,522.0	18	375.0	1,800.0
		변경	83	10,328.0	87,780.0	18	3,111.0	31,243.0	46	6,799.0	54,522.0	19	418.0	2,015.0
보행자 전용도로	계	57	3,720.0	33,356.0	11	1,426.0	17,450.0	7	733.0	9,336.0	39	1,561.0	6,570.0	
	중로	4	815.0	13,820.0	1	319.0	6,380.0	3	496.0	7,440.0	-	-	-	
	소로	53	2,905.0	19,536.0	10	1,107.0	11,070.0	4	237.0	1,896.0	39	1,561.0	6,570.0	
기타 (가차전세 등)				31,724.0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	30	주간선 도로	8,351 (2,386)	26호광장가장리 1886-6답 (지구경계북서측)	웅천동구역계 웅천동산256-1입 (지구경계남동측)	일반도로		전고 133호 '97.5.20	( )는 웅천지구 내 연장임
기정	대로	2	17	30	주간선 도로	875	대로2-7 웅천동1215-3전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1587구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8	30	주간선 도로	1,738	대로2-7 시전동514-3답	대로2-7 시전동597답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0	주간선 도로	709	대로2-18 시전동1758도	대3-42 웅천동 1758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857	대로2-18 웅천동1037-1전	대로2-19 웅천동989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3	20	보조간선 도로	940	대로2-7 웅천동594-4도	대로2-17 웅천동1225-3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0	20	보조간선 도로	940	대로2-17 웅천동1236-1전	대로2-7 웅천동1521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1	20	국지도로	112	대로2-18 웅천매립지	마리나(해수면)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2	17-20	특수도로	319	소1-305 웅천매립지	관광휴양상업1단지 웅천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93	20	국지도로	119	대로2-18 웅천매립지	중로3-39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5	20	국지도로	342	중로1-84 웅천매립지	중로3-98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4	15	집산도로	1,122	중로1-42 웅천동1,000전	중로3-94 웅천동661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5	15	국지도로	229	대로2-7 웅천동487-1답	대로2-18 웅천동1061-81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6	15	집산도로	457	대로2-7 웅천동443답	대로2-18 웅천동1068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7	15	국지도로	183	대로2-7 웅천동477-3도	중로1-43 웅천동616-1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0	15	집산도로	650	중로1-43 웅천동297답	중로2-116 웅천동산131-2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3	15	집산도로	981	중로2-123 웅천동1486답	대로2-18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5	15	특수도로	180	중로1-42 웅천동995전	경관녹지(북서측) 웅천동912-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86	15	특수도로	198	대로2-19 웅천동992답	중로1-42 웅천동99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87	15	특수도로	118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 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37	15	집산도로	158	대로2-7 웅천동388-5답	중로1-43 웅천동373-1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8	15	집산도로	965	중로1-43 웅천동352답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산127-3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9	15	국지도로	97	대로2-17 웅천동161-2답	소로1-297 웅천동157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0	15	국지도로	45	소로3-915 웅천동산132-3입	대로2-17 웅천동산132-3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1	15	국지도로	107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2	15	국지도로	80	중로2-44 웅천동530전	중로2-120 웅천동575-1대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3	15	국지도로	321	대로2-7 웅천동509-1도	중로2-44 웅천동산75-1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4	15	국지도로	110	중로1-43 웅천동618전	중로2-120 웅천동585-5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2	15	국지도로	123	중로1-43 웅천동629대	중로2-44 웅천동625-1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3	19.5	집산도로	117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1486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420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375	중로1-84 웅천동매립지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599	중로3-94 웅천동663전	중로2-115 웅천동73-2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4	12	국지도로	82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5	12	국지도로	76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6	12	집산도로	391	중로2-44 웅천동661전	중로2-115 웅천동89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8	12	국지도로	193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마리나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0	14	국지도로	385	중로1-85 웅천동매립지	중로1-85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1	14	국지도로	273	대로2-7 웅천동1613구	어항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1	10-13	국지도로	212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2	10-13	국지도로	262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2	10	국지도로	232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7	10	특수도로	82	중로1-42 웅천동1045-2입	소로1-208 웅천동850-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8	10	특수도로	272	소로1-210 웅천동1052전	중로2-44 웅천동868-9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9	10	국지도로	108	중로1-42 웅천동1045-10전	대로2-18 웅천동1061-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0	10	국지도로	370	소로1-209 웅천동848전	중로2-44 웅천동781-1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1	대로2-18 웅천동483-2도	중로2-45 웅천동46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46	중로2-76 웅천동440답	중로2-45 웅천동463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7	10	국지도로	157	중로2-77 웅천동475-1답	중로2-114 웅천동38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6	10	특수도로	141	중로2-77 웅천동608-1대	중로2-114 웅천동38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07	10	국지도로	99	중로2-77 웅천동637전	중로2-114 웅천동37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8	10	특수도로	31	대로2-7 웅천동383-5답	소로1-217 웅천동470-7전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09	10	특수도로	34	소로1-217 웅천동470-6도	소로1-287 웅천동472-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10	10	특수도로	35	소로1-287 웅천동472-1전	소로1-288 웅천동37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11	10	국지도로	362	중로2-114 웅천동389답	중로2-114 웅천동378-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2	10	국지도로	122	중로1-43 웅천동369전	중로3-94 웅천동681-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3	10	국지도로	122	중로1-43 웅천동639-1전	중로3-94 웅천동691-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4	10	국지도로	114	중로3-94 웅천동665전	경관녹지(북측) 웅천동700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5	10	국지도로	585	중로2-115 웅천동산110-1유	중로2-116 웅천동156-5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6	10	국지도로	83	소로1-296 웅천동148-3전	중로2-116 웅천동157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7	10	특수도로	161	대로2-7 웅천동821-1도	소로1-210 웅천동848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18	10	국지도로	256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1-42 웅천동1020-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9	10	국지도로	88	중로2-76 웅천동454답	중로2-45 웅천동460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20	10	국지도로	16	소로1-216 웅천동445-2답	소로2-1096 웅천동445-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21	10	특수도로	160	중로1-43 웅천동295답	대로2-7 웅천동280-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22	10	국지도로	47	대로2-17 웅천동1242-3답	소로2-933 웅천동124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23	10	특수도로	79	중로1-82 웅천동매립지	중로3-96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24	10	특수도로	112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중로1-83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96	11	국지도로	133	중로2-44 웅천동808전	중로2-44 웅천동752-1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4	8	국지도로	133	소로1-209 웅천동1045-5전	소로1-209 웅천동1048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5	8	국지도로	319	소로1-209 웅천동502-7답	소로1-209 웅천동1061-31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6	8	국지도로	116	소로1-209 웅천동1061-2전	소로2-905 웅천동1061-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7	8	국지도로	86	소로1-209 웅천동1061-2전	소로2-908 웅천동1042-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8	8	국지도로	162	소로1-209 웅천동1040-1전	소로1-209 웅천동1061-40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9	8	국지도로	463	중로2-76 웅천동1078답	중로2-909 웅천동1070-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0	8	국지도로	16	중로2-76 웅천동1068답	소로2-909 웅천동1069-4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1	8	국지도로	66	소로2-909 웅천동1069-4답	소로2-912 웅천동1070-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2	8	국지도로	65	소로2-909 웅천동1072대	소로2-957 웅천동1070-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23	8	국지도로	520	소로1-296 웅천동산111-7입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157-1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33	8	국지도로	503	소로1-303 웅천동1244전	소로1-303 웅천동124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57	8	국지도로	100	소로2-909 웅천동1070-7잡	소로2-909 웅천동1075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0	8	국지도로	450	소로1-210 웅천동1061-21전	소로1-210 웅천동781-1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1	8	국지도로	126	소로1-210 웅천동1061-21전	소로2-1077 웅천동828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2	8	국지도로	57	소로1-210 웅천동839-3전	소로2-1077 웅천동829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3	8	국지도로	62	소로1-210 웅천동839-1전	소로2-1077 웅천동8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4	8	국지도로	69	소로1-210 웅천동781-9전	소로2-1077 웅천동835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5	8	국지도로	77	소로1-210 웅천동781-11전	소로2-1077 웅천동79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6	8	국지도로	94	소로1-294 웅천동639-1전	중로2-122 웅천동629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7	8	국지도로	110	소로1-294 웅천동651대	중로2-122 웅천동626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8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682-6답	소로1-294 웅천동670-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9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366답	소로1-294 웅천동650-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0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368답	소로1-294 웅천동639-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1	8	특수도로	44	중로2-115 웅천동142전	소로2-923 웅천동14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152	8	특수도로	47	소로2-923 웅천동144입	소로1-297 웅천동150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153	8	특수도로	55	소로1-296 웅천동산118입	소로2-923 웅천동산112-2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154	8	국지도로	132	중로2-115 웅천동360답	소로1-293 웅천동682-6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5	8	국지도로	132	중로2-115 웅천동356-1답	소로1-293 웅천동366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6	8	국지도로	148	소로2-1092 웅천동356-1답	소로1-293 웅천동367-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7	8	국지도로	74	소로1-292 웅천동390답	소로1-292 웅천동379-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8	8	국지도로	98	소로1-292 웅천동397전	소로2-1094 웅천동392-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59	8	국지도로	341	소로1-300 웅천동460답	소로2-1096 웅천동46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0	8	국지도로	51	소로2-1096 웅천동451답	소로2-1096 웅천동448수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1	8	국지도로	16	중로2-76 웅천동447답	소로2-1096 웅천동448수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2	8	국지도로	16	소로1-300 웅천동460답	소로2-1100 웅천동459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3	8	국지도로	360	중로2-76 웅천동1067답	소로2-1100 웅천동1066-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4	8	국지도로	87	소로2-1100 웅천동1064-1답	소로2-1100 웅천동458-1답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65	8	국지도로	187	소로1-299 응천동1021대	소로2-1103 응천동1028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6	8	국지도로	112	소로1-299 응천동1026-3잡	소로2-1102 응천동1034-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7	8	국지도로	175	소로1-299 응천동1026전	소로1-299 응천동1019-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68	8	특수도로	91	중로3-96 응천동매립지	해수면 응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174	8	국지도로	117	소로2-933 응천동1242-5전	소로2-1112 응천동164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75	8	국지도로	80	소로2-933 응천동1252-5전	소로2-933 응천동164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77	8	국지도로	39	중로3-96 응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1단지 응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78	8	국지도로	36	중로3-37 응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응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79	8	국지도로	124	중로3-39 응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응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64	8	국지도로	132	소로1-294 응천동653대	중로2-122 응천동626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65	8	국지도로	117	중로3-37 응천동매립지	중로3-37 응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66	8	국지도로	198	중로3-39 응천동매립지	중로3-39 응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48	9	국지도로	130	아파트5-2 응천동산141-1입	중로2-117 응천동산132-3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61	6	특수도로	15	중로1-42 응천동1047전	소로3-872 응천동1047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2	6	특수도로	14	소로3-873 응천동850-2전4	소로1-207 응천동850-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3	4	특수도로	13	소로2-904 응천동1051전	소로1-208 응천동105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4	4	특수도로	13	소로2-905 응천동1061-1전	소로1-298 응천동106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5	4	특수도로	28	소로2-906 응천동1061-18전	소로2-905 응천동1061-18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6	4	특수도로	28	소로2-905 응천동1061-4전	소로2-906 응천동1061-4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7	4	특수도로	26	대로2-18 응천동1059대	소로2-905 응천동1058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8	6	특수도로	14	소로3-875 응천동822-1답	소로1-298 응천동822-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9	6	특수도로	23	대로2-7 응천동502-7답	소로3-876 응천동502-7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75	4	국지도로	149	중로3-68 응천동703전	수도27 응천동706-4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76	4	특수도로	29	중로3-94 응천동73-18입	중로3-68 응천동73-24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1	6	특수도로	25	대로2-18 응천동1042-2도	소로3-874 응천동1040-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2	6	특수도로	24	대로2-18 응천동1030답	소로3-877 응천동1069-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3	6	특수도로	24	대로2-18 응천동1029답	소로2-909 응천동1029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28	6	국지도로	9	소로3-561 응천동1047전	소로2-904 응천동1047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29	6	국지도로	8	소로2-904 웅천동1047전	소로3-562 웅천동850-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0	6	국지도로	8	소로3-591 웅천동1040-1전	소로2-908 웅천동1040-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1	6	국지도로	8	소로2-905 웅천동822-1답	소로3-568 웅천동822-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2	6	국지도로	8	소로3-569 웅천동502-1답	소로2-905 웅천동502-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3	6	국지도로	8	소로3-592 웅천동1069-1답	소로2-909 웅천동1069-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4	6	국지도로	8	소로3-887 웅천동821답	소로2-1077 웅천동82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5	6	특수도로	29	대로2-7 웅천동832-2도	소로2-1077 웅천동83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36	4	특수도로	11	소로1-216 웅천동464답	소로3-898 웅천동46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37	6	국지도로	5	소로3-888 웅천동1064-2답	소로2-1100 웅천동1064-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38	4	특수도로	21	대로2-18 웅천동1037-1전	소로3-893 웅천동1037-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39	4	특수도로	10	중로2-76 웅천동458-1답	소로3-894 웅천동1078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0	6	특수도로	32	소로1-292 웅천동394답	대로2-7 웅천동406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1	6	특수도로	33	중로1-43 웅천동351-5답	소로1-292 웅천동398-1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2	6	특수도로	31	대로2-7 웅천동794-1도	소로2-1077 웅천동79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3	6	특수도로	7	소로1-298 웅천동821답	소로3-878 웅천동82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4	6	특수도로	20	대로2-18 웅천동1064-2답	소로3-881 웅천동1064-2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5	4	특수도로	3	중로2-76 웅천동455답	소로3-895 웅천동45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6	4	특수도로	4	소로2-76 웅천동440-5답	소로3-897 웅천동440-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7	4	특수도로	10	중로2-115 웅천동351-1답	소로3-899 웅천동353-2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48	4	국지도로	7	소로3-911 웅천동1026-2도	소로2-1102 웅천동1026-2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49	4	국지도로	6	소로3-912 웅천동1033-3대	소로2-1102 웅천동1033-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0	4	국지도로	9	소로3-913 웅천동1078답	소로2-1100 웅천동107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1	4	국지도로	25	소로3-914 웅천동455답	소로2-1100 웅천동459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2	6	국지도로	57	중로1-42 웅천동1001-2전	중교1 웅천동998-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3	4	국지도로	18	소로3-915 웅천동440-4답	소로2-1096 웅천동444답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54	4	국지도로	5	소로3-916 웅천동463답	소로2-1096 웅천동463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5	4	국지도로	6	소로3-917 웅천동353-2답	소로2-1093 웅천동353-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6	4	특수도로	54	소로1-296 웅천동산122-18입	소로2-923 웅천동산122-15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57	4	특수도로	22	중로2-80 웅천동235-3전	소로1-296 웅천동산122-18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58	4	특수도로	15	중로2-80 웅천동산121입	소로1-296 웅천동15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0	4	특수도로	10	대로2-7 웅천동1248-2도	소로2-933 웅천동1248-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1	4	특수도로	30	소로2-1078 웅천동840전	소로1-210 웅천동839-3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2	4	특수도로	30	소로2-1077 웅천동1061-43전	소로2-1078 웅천동84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3	4	특수도로	15	소로1-298 웅천동1061-45전	소로2-1077 웅천동1061-43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4	4	특수도로	16	중로2-45 웅천동1061-8입	소로2-1100 웅천동1061-8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5	4	특수도로	16	중로1-42 웅천동1045-1전	소로2-1104 웅천동1018-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6	4	특수도로	24	소로1-208 웅천동1061-23전	소로1-210 웅천동84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7	4	특수도로	21	대로2-18 웅천동1026-2도	소로3-892 웅천동1026-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68	6	특수도로	31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소로1-285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91	2.5	특수도로	212	중로1-83 웅천동매립지	중로1-82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27	6	국지도로	31	소로2-1119 웅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91	4	특수도로	578	중로1-81 웅천동1284전	중로2-117 웅천동산132-3입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209	5	국지도로	43	소로1-296	웅천동1817-1대	일반도로			

#### 다.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3-1209	· 도로신설 - B= 5m, L= 43m	· 구릉지주택 1단지 6번 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신설

2. 주차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노외주차장	-	45,331.3	-	45,331.3		
기정	17	노외주차장	초등학교1 남측단독주택지 웅천동1054-1일원	600.1	-	600.1		
기정	21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2단지남측 웅천동487일원	1,042.9	-	1,042.9		
기정	49	노외주차장	단독주택7단지내 웅천동1068일원	182.4	-	182.4		
기정	91	노외주차장	아파트3-1단지서측 웅천동982일원	17,053.6	-	17,053.6		
기정	92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5,721	-	5,721		
기정	93	노외주차장	공공업무4단지동측 웅천동매립지	1,116.6	-	1,116.6		
기정	94	노외주차장	단독주택2단지내 웅천동1061-21일원	446.5	-	446.5		
기정	95	노외주차장	단독주택3단지내 웅천동1016일원	398.2	-	398.2		
기정	96	노외주차장	단독주택4단지내 웅천동1064-1일원	406.5	-	406.5		
기정	97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1단지남측 웅천동460일원	402.7	-	402.7		
기정	98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2단지주변 웅천동473일원	1,743	-	1,743		
기정	99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649-1일원	441	-	441		
기정	100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639-1일원	413	-	413		
기정	101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86-1일원	793	-	793		
기정	102	노외주차장	단독주택5단지내 웅천동382일원	459	-	459		
기정	103	노외주차장	단독주택8단지내 웅천동1243일원	866	-	866		
기정	104	노외주차장	마리나주변 웅천동매립지	3,777	-	3,777		
기정	105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2단지내 웅천동매립지	3,014	-	3,014		
기정	125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3단지내 웅천동매립지	2,261	-	2,261		
기정	174	노외주차장	웅천동 1821-5	4,193.8		4,193.8		

## 2 공간시설(변경)

### 1. 녹지(변경)

####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녹지	-	-	398,773.6	증)3,984	402,757.6		
기정	완30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공공업무1단지접면) 웅천동758-3일원	1,829.7	-	1,829.7		
기정	완3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836-1일원	1,602.0	-	1,602.0		
기정	완34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1단지접면) 웅천동503-2일원	1,117.8	-	1,117.8		
기정	완36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500일원	1,171.9	-	1,171.9		
기정	완37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4단지접면) 웅천동1208-5일원	4,307.0	-	4,307.0		
기정	완38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8단지접면) 웅천동1217-3일원	2,549.0	-	2,549.0		
기정	완41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타운하우스접면) 웅천동1479-1일원	4,000.0	-	4,000.0		
기정	완4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6-2단지접면) 웅천동1456일원	2,173.0	-	2,173.0		
기정	완43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타운하우스접면) 웅천동1501-5일원	4,058.0	-	4,058.0		
기정	완46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7단지접면) 웅천동1535-1일원	2,229.0	-	2,229.0		
기정	완47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관광휴양산업3단지접면) 웅천동1554일원	10,891.0	-	10,891.0		
기정	완52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37-1일원	163.1	-	163.1		
기정	완53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30일원	1,282.2	-	1,282.2		
기정	완5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37-1일원	164.0	-	164.0		
기정	완5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4단지접면) 웅천동1061-8일원	1,020.0	-	1,020.0		
기정	완56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61-9일원	1,106.7	-	1,106.7		
기정	완57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1단지접면) 웅천동1061-28일원	683.7	-	683.7		
기정	완6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68일원	197.2	-	197.2		
기정	완63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501.9	-	501.9		
기정	완6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187.7	-	187.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완6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266.9	-	266.9		
기정	완180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828-3일원	1,760.5	-	1,760.5		
기정	완181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8단지접면) 웅천동1248-5일원	416.0	-	416.0		
기정	완18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5단지접면) 웅천동389-2일원	2,047.0	-	2,047.0		
기정	완183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2-1단지접면) 웅천동261-1일원	1,810.0	-	1,810.0		
기정	완18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2-2단지접면) 웅천동243-5일원	1,173.0	-	1,173.0		
기정	완18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6-1단지접면) 웅천동1235일원	1,744.0	-	1,744.0		
기정	완186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1단지접면) 웅천동258일원	1,901.0	-	1,901.0		
기정	완187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2단지접면) 웅천동217일원	1,136.0	-	1,136.0		
기정	완188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4단지접면) 웅천동1064-2일원	201.0	-	201.0		
기정	완189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26-2일원	357.7	-	357.7		
기정	완190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32일원	913.1	-	913.1		
기정	완19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2단지접면) 웅천동208일원	1,292.0	-	1,292.0		
기정	완19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794-1일원	297.0	-	297.0		
기정	경68	녹지	경관녹지	북측지구계주변 웅천동705일원	93,112.0	-	93,112.0		
기정	경69	녹지	경관녹지	오층사공원주변 웅천동666일원	1,064.0	-	1,064.0		
기정	경75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지남측 웅천동235-2일원	2,162.6	-	2,162.6		
기정	경78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지동측지구계주변 웅천동산131-4일원	14,646.0	-	14,646.0		
기정	경86	녹지	경관녹지	동측지구계주변 웅천동산169일원	79,428.0	-	79,428.0		
기정	경90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3,230.0	-	3,230.0		
기정	경93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1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802.0	-	802.0		
기정	경94	녹지	경관녹지	청소년문화공원남서측 웅천동매립지	1,215.5	-	1,215.5		
기정	경98	녹지	경관녹지	지구북서측경계(망마공원) 웅천동910일원	63,089.5	-	63,089.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100	녹지	경관녹지	지구서측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991일원	3,417.9	-	3,417.9		
기정	경193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주택2단지주변 웅천동663-1일원	290.0	-	290.0		
기정	경194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주택2단지주변 웅천동664일원	226.0	-	226.0		
기정	경195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주택2단지주변 웅천동702일원	1,043.0	-	1,043.0		
기정	경196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주택2단지주변 웅천동73-28일원	479.0	-	479.0		
기정	경197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2단지주변 웅천동75-15일원	2,270.0	-	2,270.0		
기정	경198	녹지	경관 녹지	단독주택6단지주변 웅천동87일원	613.0	-	613.0		
기정	경199	녹지	경관 녹지	지구중심상업주변 웅천동611일원	1,598.0	-	1,598.0		
기정	경200	녹지	경관 녹지	관광휴양상업1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11.0	-	111.0		
기정	경202	녹지	경관 녹지	중로3-92호선변(관광휴양상업1단지접면) 웅천동매립지	2,630.0	-	2,630.0		
기정	경203	녹지	경관 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796.0	-	1,796.0		
기정	경204	녹지	경관 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3,546.0	-	3,546.0		
기정	경205	녹지	경관 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1557-6일원	1,950.0	-	1,950.0		
기정	경206	녹지	경관 녹지	아파트6-1단지주변 웅천동227-3일원	2,896.0	-	2,896.0		
기정	경207	녹지	경관 녹지	아파트4단지주변 웅천동292일원	2,954.0	-	2,954.0		
기정	경208	녹지	경관 녹지	아파트2-1단지주변 웅천동306-1일원	2,641.0	-	2,641.0		
기정	경209	녹지	경관 녹지	아파트2-2단지주변 웅천동337일원	4,407.0	-	4,407.0		
기정	경212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12-2일원	368.0	-	368.0		
기정	경213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12-6일원	1,227.0	-	1,227.0		
기정	경214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22-16일원	698.0	-	698.0		
기정	경215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02-1일원	2,518.0	-	2,518.0		
기정	경216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구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22-17일원	389.0	-	389.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217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47일원	2,237.0	증)1,390	3,627		
기정	경218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2일원	416.0	-	416.0		
기정	경219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3일원	410.0	-	410.0		
기정	경220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5일원	442.0	증)2,594	3,036		
기정	경221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28-4일원	2,618.0	-	2,618.0		
기정	경222	녹지	경관 녹지	고등학교주변 웅천동358-1일원	8,193.0	-	8,193.0		
기정	경223	녹지	경관 녹지	중학교1주변 웅천동404일원	9,931.0	-	9,931.0		
기정	경224	녹지	경관 녹지	아파트3-1단지서측 웅천동매립지	133.0	-	133.0		
기정	경272	녹지	경관 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1556일원	3,629.0	-	3,629.0		
기정	경280	녹지	경관 녹지	구룡지주택2단지주변 웅천동82일원	553.0	-	553.0		
기정	경281	녹지	경관 녹지	오층사공원주변 626전	39.0	-	39.0		
기정	경282	녹지	경관 녹지	오층사공원주변 627전	111.0	-	111.0		
기정	연225	녹지	연결 녹지	아파트 2단지 사이 웅천동253-1일원	2,493.0	-	2,493.0		
기정	연226	녹지	연결 녹지	아파트 5단지 사이 웅천동257-1일원	2,258.0	-	2,258.0		
기정	연227	녹지	연결 녹지	고등학교주변 웅천동341일원	3,483.0	-	3,483.0		
기정	연273	녹지	연결 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895.0	-	1,895.0		
기정	연274	녹지	연결 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2,319.0	-	2,319.0		
기정	연275	녹지	연결 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4,246.0	-	4,246.0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217	녹지	· 면적변경 - A= 2,237㎡ → 3,627㎡, 증)1,390㎡	·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어려운 획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경220	녹지	· 면적변경 - A= 442㎡ → 3,036㎡, 증)2,594㎡	·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어려운 획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 공 원(변경없음)

가. 공원 총괄표

구 분	도시계획구역	
	개 소	면 적(m <sup>2</sup> )
합 계	8	543,649.9
근 린 공 원	5	483,850.9
역 사 공 원	2	26,826.0
문 화 공 원	1	32,973.0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공원(웅천공원)	근린공원	대로2-7호선주변 웅천동	366,093.0	-	366,093.0		
기정	71	공원(오층사공원)	역사공원	지구중심상업지북측 웅천동624일원	11,202. 0	-	11,202. 0		
기정	72	공원(청소년문화공원)	근린공원	아파트3단지주변 웅천동1007일원	34,562.7	-	34,562.7		
기정	88	공원(암골못공원)	근린공원	테라스하우스동남측 웅천동99일원	23,171.0	-	23,171.0		
기정	89	공원(웅천못공원)	근린공원	구룡지구택지남측 웅천동228일원	36,490.0	-	36,490.0		
기정	91	공원(자당공원)	역사공원	지구남동측단독주택지구주변 웅천동1419일원	15,624.0	-	15,624.0		
기정	92	공원(해변문화공원)	문화공원	매립지해안변 웅천동매립지	32,973. 0	-	32,973. 0		
기정	169	공원(천수공원)	근린공원	마리나상부 웅천동매립지	23,534.2	-	23,534.2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1. 수도시설(변경없음)

##### 가. 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배수지	-	9,309.0	-	9,309.0		
기정	26	배수지	웅천동543-2일원 중로2-44호선주변	7,566.0	-	7,566.0		
기정	27	배수지	웅천동706-4일원 구릉지구택지서측	1,343.0	-	1,343.0		
기정	28	배수지	웅천동73-54일원 테라스하우스북측	400.0	-	400.0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공공청사	-	지구중심상업2단지변 웅천동371일원	2,631.0	-	2,631.0		

#### 2. 학 교(변경없음)

#####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 1) 유치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유치원	-	5,366.0	-	5,366.0		
기정	112	학교	유치원	웅천동328-2일원 중로2-80호선서측	3,150.0	-	3,150.0		
기정	113	학교	유치원	웅천동1252-4일원 소로2-933호선서측	2,216.0	-	2,216.0		

2) 초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초등학교	-	46,170.4	-	46,170.4		
기정	79	응천초	초등학교	응천동 1674 일원	15,156.4	-	15,156.4		
기정	80	응천2초교	초등학교	응천동1396-1일원 중로1-81호선변 자당공원동측	14,729.0	-	14,729.0		
기정	81	응천3초교	초등학교	응천동 1825	16,285.0	-	16,285.0		

3) 중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중학교	-	31,372.3	-	31,372.3		
기정	92	응천1중	중학교	응천동 1826	16,080.0	-	16,080.0		
기정	95	응천2중	중학교	응천동845일원 단독주택2단지주변	15,292.3	-	15,292.3		

4) 고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8	응천고교	고등학교	응천동338-1일원 중로2-80호선변 암골못공원주변	17,065.0	-	17,065.0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가.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하수도시설2	오수중계펌프장	청소년문화공원 동측	2,031.1	-	2,031.1		

V.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단독1단지 (점포주택 63필지) 24,369.0	1	1,025.4	-1	299.7	점포주택
			-2	242.8	점포주택
			-3	240.0	
			-4	242.9	
	2	970.2	-1	251.9	점포주택
			-2	238.3	점포주택
			-3	250.0	점포주택
			-4	230.0	점포주택
	3	808.8	-1	206.9	
			-2	202.4	
			-3	199.9	
			-4	199.6	점포주택
	4	656.7	-1	220.8	점포주택
			-2	221.9	점포주택
			-3	214.0	점포주택
			-4	219.5	점포주택
	5	2,755.8	-2	216.8	점포주택
			-3	216.0	점포주택
			-4	216.4	점포주택
			-5	216.2	점포주택
			-6	221.6	점포주택
			-7	206.6	점포주택
			-8	206.6	
			-9	206.6	
			-10	206.6	
			-11	207.6	
			-12	207.6	
			-13	207.7	점포주택
				6	2,827.4
-2	216.5				
-3	217.3				
-4	217.4				
-5	217.4				
-6	220.4	점포주택			
-7	225.8	점포주택			
-8	212.7				
-9	213.7				
-10	213.8				
-11	213.7				
-12	213.6				
-13	226.1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7	1,010.3	-1	250.8	점포주택
			-2	250.7	점포주택
			-3	250.6	점포주택
			-4	258.2	점포주택
	8	1,502.4	-1	210.5	점포주택
			-2	216.5	점포주택
			-3	212.3	점포주택
			-4	216.6	점포주택
			-5	216.6	점포주택
			-6	215.1	점포주택
			-7	214.8	점포주택
	9	1,049.7	-1	208.8	점포주택
			-2	210.3	점포주택
			-3	210.1	점포주택
			-4	210.2	점포주택
			-5	210.3	점포주택
	10	2,029.2	-1	225.3	점포주택
			-2	223.5	
			-3	223.4	
			-4	223.6	
			-5	225.1	
			-6	224.9	
			-7	224.8	
			-8	223.8	
			-9	234.8	점포주택
	11	1,979.0	-1	226.7	점포주택
			-2	226.7	
			-3	226.8	
			-4	226.7	
			-5	214.3	
			-6	214.5	
			-7	214.4	
			-8	215.4	
			-9	213.5	점포주택
	12	1,046.0	-1	204.3	점포주택
			-2	210.1	점포주택
			-3	210.2	점포주택
			-4	210.2	점포주택
			-5	211.2	점포주택
	13	848.2	-1	212.3	점포주택
			-2	212.3	점포주택
			-3	212.3	점포주택
			-4	211.3	점포주택
	14	1,547.1	-1	228.0	
			-2	228.0	
			-3	228.9	
			-4	218.8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5	214.8	
			-6	214.8	
			-7	213.8	
	15	1,583.9	-1	224.8	
			-2	224.8	
			-3	226.0	
			-4	235.3	
			-5	224.3	
			-6	224.3	
			-7	224.4	
	16	1,208.6	-1	239.0	점포주택
			-2	237.9	점포주택
			-3	237.9	점포주택
			-4	237.8	점포주택
			-5	256.0	점포주택
	17	1,520.3	-1	217.0	점포주택
			-2	215.0	점포주택
			-3	215.0	점포주택
			-4	215.0	점포주택
			-5	214.9	점포주택
			-6	214.9	점포주택
			-7	228.5	점포주택
단독2단지 (점포주택 52필지) 24,095.9	1	2,211.7	-1	363.4	점포주택
			-2	370.3	점포주택
			-3	369.4	점포주택
			-4	368.3	점포주택
			-5	370.7	점포주택
			-6	369.6	점포주택
	2	972.5	-1	244.7	점포주택
			-2	242.6	점포주택
			-3	243.6	점포주택
			-4	241.6	점포주택
	3	812.8	-1	203.0	점포주택
			-2	203.0	점포주택
			-3	203.9	점포주택
			-4	202.9	점포주택
	4	1,610.7	-1	208.4	
			-2	208.4	
			-3	208.3	
			-4	209.4	
			-5	182.5	
			-6	197.5	
			-7	197.8	
			-8	198.4	
	5	1,231.2	-1	210.9	
			-2	211.0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3	211.0	
			-4	198.8	
			-5	199.7	
			-6	199.8	
	6	1,951.3	-1	220.7	점포주택
			-2	214.6	점포주택
			-3	212.6	점포주택
			-4	210.5	점포주택
			-5	218.2	
			-6	218.1	
			-7	218.2	
			-8	218.2	
			-9	220.2	점포주택
	7	1,721.7	-1	221.6	
			-2	222.5	
			-3	220.5	
			-4	220.5	
			-5	209.9	
			-6	208.9	
			-7	208.9	
			-8	208.9	
	8	1,739.7	-1	222.9	점포주택
			-2	222.8	
			-3	222.9	
			-4	223.9	
			-5	208.9	
			-6	210.8	
			-7	212.7	
			-8	214.8	점포주택
	9	1,936.1	-1	219.4	점포주택
			-2	219.4	
			-3	219.4	
			-4	220.5	
			-5	212.0	
			-6	211.1	
			-7	211.1	
			-8	211.1	
			-9	212.1	점포주택
	10	2,164.3	-1	222.1	점포주택
			-2	222.1	
			-3	222.2	
			-4	222.2	
			-5	221.2	
			-6	211.7	
			-7	210.7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8	210.7	
			-9	210.7	
			-10	210.7	점포주택
	11	2,443.8	-1	222.5	점포주택
			-2	222.5	
			-3	222.5	
			-4	222.5	
			-5	223.5	
			-6	224.3	
			-7	221.2	
			-8	221.2	
			-9	221.2	
			-10	221.2	
			-11	221.2	점포주택
	12	1,514.3	-1	216.8	점포주택
			-2	216.0	점포주택
			-3	215.8	점포주택
			-4	215.9	점포주택
			-5	215.9	점포주택
			-6	215.9	점포주택
			-7	218.0	점포주택
	13	1,720.4	-1	215.1	점포주택
			-2	215.0	점포주택
			-3	215.1	점포주택
			-4	215.0	점포주택
			-5	215.0	점포주택
			-6	215.1	점포주택
			-7	215.0	점포주택
			-8	215.1	점포주택
	14	2,065.4	-1	202.4	점포주택
			-2	206.3	점포주택
			-3	206.4	점포주택
			-4	206.4	점포주택
			-5	206.3	점포주택
			-6	206.2	점포주택
			-7	206.4	점포주택
			-8	206.3	점포주택
			-9	207.4	점포주택
			-10	211.3	점포주택
단독3단지 (점포주택 22필지)	1	625.8	-1	208.6	점포주택
			-2	208.6	점포주택
11,659.5			-3	208.6	점포주택
	2	2,571.6	-1	223.7	점포주택
			-2	215.6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3	215.6	점포주택
			-4	215.5	점포주택
			-5	215.5	점포주택
			-6	215.5	점포주택
			-7	207.5	
			-8	213.6	
			-9	214.5	
			-10	215.6	
			-11	216.5	
			-12	202.5	
	3	3,364.7	-1	209.1	
			-2	209.4	
			-3	209.4	
			-4	209.5	
			-5	209.5	
			-6	209.5	
			-7	209.5	
			-8	223.5	점포주택
			-9	209.2	점포주택
			-10	209.4	
			-11	209.3	
			-12	209.3	
			-13	209.4	
			-14	209.5	
			-15	209.6	
			-16	209.6	
	4	2,122.5	-1	239.5	
			-2	206.4	
			-3	204.5	
			-4	205.4	
			-5	210.4	
			-6	211.4	
			-7	202.6	
			-8	202.5	
			-9	202.5	
			-10	237.3	
	5	1,228.9	-1	199.3	점포주택
			-2	206.2	점포주택
			-3	206.4	점포주택
			-4	206.3	점포주택
			-5	206.4	점포주택
			-6	204.3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6	1,746.0	-1	218.3	
			-2	218.3	
			-3	218.4	
			-4	217.3	점포주택
			-5	219.2	점포주택
			-6	213.0	점포주택
			-7	212.7	점포주택
			-8	228.8	점포주택
단독4단지 (점포주택 47필지) 17,393.8	1	706.2	-1	235.1	점포주택
			-2	235.1	점포주택
			-3	236.0	점포주택
	2	711.5	-1	236.1	점포주택
			-2	237.2	점포주택
			-3	238.2	점포주택
	3	2,067.5	-1	229.6	
			-2	230.5	
			-3	230.5	
			-4	230.4	
			-5	233.4	
			-6	230.5	
			-7	227.6	
			-8	227.5	
			-9	227.5	
	4	1,101.9	-1	219.2	
			-2	219.2	
			-3	221.1	
			-4	222.1	
			-5	220.3	
	5	1,192.7	-1	239.1	점포주택
			-2	237.2	점포주택
			-3	237.1	점포주택
			-4	237.2	점포주택
			-5	242.1	점포주택
	6	923.6	-1	230.6	점포주택
			-2	230.6	점포주택
			-3	230.6	점포주택
			-4	231.8	점포주택
	7	1,341.1	-1	223.4	점포주택
			-2	222.5	점포주택
			-3	225.5	점포주택
			-4	223.5	점포주택
			-5	223.6	점포주택
			-6	222.6	점포주택
	8	1,388.1	-1	230.1	점포주택
			-2	230.3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3	230.2	점포주택
			-4	230.2	점포주택
			-5	230.2	점포주택
			-6	237.1	점포주택
	9	682.1	-1	222.0	점포주택
			-2	222.0	점포주택
			-3	238.1	점포주택
	10	1,329.0	-1	219.0	점포주택
			-2	222.2	점포주택
			-3	221.9	점포주택
			-4	222.0	점포주택
			-5	221.9	점포주택
			-6	222.0	점포주택
	11	2,043.6	-1	227.3	
			-2	226.1	
			-3	226.1	
			-4	226.1	
			-5	227.2	
			-6	228.2	
			-7	227.1	
			-8	227.2	
			-9	228.3	
	12	1,328.5	-1	215.6	
			-2	215.6	
			-3	215.6	
			-4	215.6	
			-5	233.6	
			-6	232.5	
	13	1,149.0	-1	229.4	점포주택
			-2	228.5	점포주택
			-3	228.4	점포주택
			-4	228.4	점포주택
			-5	234.3	점포주택
	14	1,429.0	-1	238.0	점포주택
			-2	239.1	점포주택
			-3	238.9	점포주택
			-4	240.0	점포주택
			-5	237.0	점포주택
			-6	236.0	점포주택
단독5단지 (점포주택 31필지)	1	4,074	-1	227	점포주택
			-2	227	점포주택
12,978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5	227	점포주택
			-6	227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7	227	점포주택
			-8	227	점포주택
			-9	227	점포주택
			-10	226	점포주택
			-11	226	점포주택
			-12	226	점포주택
			-13	226	점포주택
			-14	226	점포주택
			-15	226	점포주택
			-16	226	점포주택
			-17	226	점포주택
			-18	223	점포주택
	2	1,024	-1	256	점포주택
			-2	256	점포주택
			-3	256	점포주택
			-4	256	점포주택
	3	3,208	-1	229	
			-2	229	
			-3	229	
			-4	229	
			-5	229	
			-6	229	
			-7	230	
			-8	229	
			-9	229	
			-10	229	
			-11	229	
			-12	229	
			-13	229	
			-14	230	
	4	2,521	-1	229	
			-2	229	
			-3	229	
			-4	229	
			-5	229	
			-6	230	
			-7	229	
			-8	229	
			-9	229	
			-10	229	
			-11	230	
	5	2,151	-1	239	점포주택
			-2	239	점포주택
			-3	239	점포주택
			-4	239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5	239	점포주택		
			-6	239	점포주택		
			-7	239	점포주택		
			-8	239	점포주택		
			-9	239	점포주택		
단독6단지 (점포주택 53필지) 28,720	1A	3,852	-1	208			
			-2	215			
				-3	215		
				-4	215		
				-5	215		
				-6	215		
				-7	215		
				-8	215		
				-9	221	점포주택	
				-10	220	점포주택	
				-11	213		
				-12	213		
				-13	213		
				-14	213		
				-15	213		
				-16	213		
				-17	213		
		2A	2,727	-18	207		
					-1	223	
					-2	229	
					-3	229	
					-4	229	
					-5	229	
					-6	229	
					-7	235	점포주택
					-8	223	
					-9	223	
					-10	224	
					-11	224	
	3A	1,011	-12	230			
					-1	274	점포주택
					-2	260	점포주택
					-3	247	점포주택
	4A	2,154	-4	230	점포주택		
					-1	199	점포주택
					-2	174	점포주택
					-3	225	점포주택
					-4	229	점포주택
					-5	309	점포주택
					-6	320	점포주택
			-7	238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8	229	점포주택
			-9	231	점포주택
	5A	3,202	-1	221	점포주택
			-2	222	
			-3	222	
			-4	222	
			-5	222	
			-6	222	
			-7	222	점포주택
			-8	206	점포주택
			-9	206	
			-10	206	
			-11	206	
			-12	206	
			-13	206	
			-14	206	
			-15	207	점포주택
	6A	2,789	-1	222	점포주택
			-2	222	
			-3	222	
			-4	222	
			-5	222	
			-6	222	
			-7	221	점포주택
			-8	206	점포주택
			-9	206	
			-10	206	
			-11	206	
			-12	206	
			-13	206	
	7A	908	-1	227	점포주택
			-2	227	점포주택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8A	1,842	-1	232	점포주택
			-2	230	점포주택
			-3	230	점포주택
			-4	230	점포주택
			-5	230	점포주택
			-6	230	점포주택
			-7	230	점포주택
			-8	230	점포주택
	9A	4,189	-1	225	점포주택
			-2	225	
			-3	225	
			-4	225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5	225	
			-6	225	
			-7	225	
			-8	229	
			-9	225	점포주택
			-10	240	점포주택
			-11	240	
			-12	240	
			-13	240	
			-14	240	
			-15	240	
			-16	240	
			-17	240	
			-18	240	점포주택
	10B	3,414	-1	236	점포주택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8	
			-8	220	
			-9	220	
			-10	220	
			-11	220	
			-12	220	
			-13	220	
			-14	220	
			-15	220	점포주택
	11B	2,071	-1	208	점포주택
			-2	208	점포주택
			-3	208	점포주택
			-4	208	점포주택
			-5	208	점포주택
			-6	208	점포주택
			-7	208	점포주택
			-8	208	점포주택
			-9	208	점포주택
			-10	199	점포주택
	12B	561	-1	280	점포주택
			-2	281	점포주택
단독7단지 (점포주택 21필지)	1	1,428.0	-1	244.0	점포주택
			-2	238.0	점포주택
12,556.6			-3	237.0	점포주택
			-4	235.0	점포주택
			-5	238.0	점포주택
			-6	236.0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2	1,618.2	-1	209.9	
			-2	198.9	
			-3	198.9	
			-4	208.9	
			-5	202.0	
			-6	198.9	
			-7	198.9	
			-8	201.8	
	3	2,177.0	-1	221.1	
			-2	217.0	
			-3	214.2	
			-4	211.1	
			-5	212.1	점포주택
			-6	222.1	점포주택
			-7	217.1	
			-8	217.1	
			-9	218.1	
			-10	227.1	
	4	2,206.7	-1	230.0	
			-2	219.1	
			-3	219.1	
			-4	219.1	
			-5	224.0	점포주택
			-6	219.1	점포주택
			-7	219.1	
			-8	219.1	
			-9	219.1	
			-10	219.0	
	5	3,142.9	-1	234.8	
			-2	223.8	
			-3	223.8	
			-4	223.8	
			-5	223.7	
			-6	223.8	
			-7	227.8	점포주택
			-8	223.8	점포주택
			-9	222.8	
			-10	222.8	
			-11	222.8	
			-12	222.7	
			-13	222.8	
			-14	223.7	
	6	1,269.8	-1	213.8	점포주택
			-2	210.8	점포주택
			-3	210.8	점포주택
			-4	210.8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5	209.8	점포주택
			-6	213.8	점포주택
	7	714.0	-1	238.0	점포주택
			-2	238.0	점포주택
			-3	238.0	점포주택
단독8단지 (점포주택 28필지)	1	4,068	-1	230	점포주택
			-2	230	점포주택
7,443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5	168	점포주택
			-6	226	점포주택
			-7	227	점포주택
			-8	227	점포주택
			-9	229	점포주택
			-10	233	점포주택
			-11	232	점포주택
			-12	231	점포주택
			-13	231	점포주택
			-14	230	점포주택
			-15	230	점포주택
			-16	230	점포주택
			-17	230	점포주택
			-18	230	점포주택
	2	2,223	-1	232	점포주택
			-2	231	점포주택
			-3	231	점포주택
			-4	231	점포주택
			-5	232	점포주택
			-6	212	
			-7	212	
			-8	213	
			-9	217	
			-10	212	점포주택
	3	1,152	-1	231	점포주택
			-2	232	
			-3	232	점포주택
			-4	231	점포주택
			-5	226	점포주택

나. 구릉지주택(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구릉지1단지	1	3,115	-1	796	
			-2	702	
			-3	760	
			-4	857	
	2	11,810	-1	730	
			-2	899	
			-3	706	
			-4	707	
			-5	716	
			-6	693	
			-7	585	
			-8	742	
			-9	846	
			-10	577	
			-11	621	
			-12	614	
			-13	674	
-14	673				
-15	672				
-16	671				
-17	684				
	3	3,382	-1	777	
			-2	763	
			-3	687	
			-4	596	
			-5	559	
	4	4,535	-1	785	
			-2	794	
			-3	790	
			-4	776	
			-5	686	
			-6	704	
	5	1,710	-1	862	
			-2	848	
	6	2,594	-1	861	
			-2	889	
			-3	844	
	7	2,391	-1	797	
			-2	797	
			-3	797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구룡지2단지	1	2,008	-1	674	
			-2	672	
			-3	662	
2	5,237		-1	692	
			-2	658	
			-3	633	
			-4	673	
			-5	689	
			-6	559	
			-7	560	
3	4,584		-8	773	
			-1	610	
			-2	645	
			-3	660	
			-4	665	
			-5	659	
			-6	642	
			-7	70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구룡지1단지	1	3,115	-1	378	
			-2	446	
			-3	453	
			-4	465	
			-5	516	
			-6	857	
2	11,810		-1	567	
			-2	570	
			-3	566	
			-4	443	
			-5	420	
			-6	410	
			-7	455	
			-8	502	
			-9	523	
			-10	423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11	594	
			-12	610	
			-13	597	
			-14	448	
			-15	433	
			-16	450	
			-17	454	
			-18	418	
			-19	417	
			-20	417	
			-21	416	
			-22	416	
			-23	416	
			-24	418	
			-25	427	
	3	3,382	-1	777	
			-2	763	
			-3	525	
			-4	443	
			-5	403	
			-6	471	
	4	3,145	-1	473	
			-2	453	
			-3	438	
			-4	447	
			-5	470	
			-6	447	
			-7	417	
	5	1,570	-1	583	
			-2	559	
			-3	568	
	6	2,165	-1	797	
			-2	684	
			-3	684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구룡지2단지	1	2,008	-1	448	
			-2	449	
			-3	449	
			-4	331	
			-5	331	
	2	5,237	-1	345	
			-2	345	
			-3	345	
			-4	345	
			-5	341	
			-6	348	
			-7	474	
			-8	489	
			-9	504	
			-10	495	
			-11	433	
			-12	388	
			-13	385	
	3	4,584	-1	377	
			-2	393	
			-3	404	
			-4	410	
			-5	414	
			-6	416	
			-7	414	
			-8	411	
			-9	642	
			-10	703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 아파트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아파트1단지	1-1	32,276.6	1-1	32,276.6	
	1-2	35,356.5	1-2	35,356.5	
아파트2단지	2-1	29,820.0	2-1	29,820.0	
	2-2	33,649.0	2-2	33,649.0	
아파트3단지	3-1	24,490.2	3-1	24,490.2	
	3-2	31,828.8	3-2	31,828.8	
아파트4단지	-	32,332.0	-	32,332.0	
아파트5단지	5-1	31,991.0	5-1	31,991.0	
	5-2	23,446.0	5-2	23,446.0	
아파트6단지	6-1	64,222.0	6-1	64,222.0	
	6-2	29,805.0	6-2	29,805.0	
아파트7단지	-	15,338.0	-	15,338.0	

나. 테라스하우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테라스하우스	-	36,794	-1	12,264	
			-2	12,265	
			-3	12,265	

다. 타운하우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타운하우스1단지	1	20,367	-1	9,864	
			-2	10,503	
타운하우스2단지	2	44,633	-1	8,459	
			-2	12,411	
			-3	12,449	
			-4	11,314	

3. 상업용지(변경없음)

가. 지구중심상업(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지구중심상업1단지	1	4,589.3	-1	796.2		
			-2	795.2		
			-3	794.2		
			-4	1,140.3		
			-5	1,063.4		
	2	6,014.4	-1	3,627.5		
			-2	1,317.5		
			-3	1,069.4		
	3	3,601.6	-1	719.4		
			-2	719.7		
			-3	719.5		
			-4	719.5		
			-5	723.5		
	지구중심상업2단지	1	7,830	-1	1,951	
				-2	1,730	
-3				1,100		
-4				1,431		
-5				1,618		
2		3,493	-1	1,203		
			-2	1,016		
			-3	1,274		
3		2,831	-1	953		
			-2	939		
			-3	939		
4		2,920	-1	960		
			-2	980		
			-3	980		
5		1,860	-1	939		
			-2	921		
6		1,967	-1	980		
			-2	987		
7		2,050	-1	1,021		
			-2	1,029		

나. 관광휴양상업(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관광휴양상업1단지	1	13,444.1	-	13,444.1	
	2	15,940.5	-	15,940.5	
	3	13,237	-	13,237	
	4	1,663	-1	755	
			-2	908	
	5	2,247	-1	650	
			-2	681	
			-3	916	
	6	17,717	-1	7,100	
			-2	10,617	
관광휴양상업2단지	1	8,722	-	8,722	
	2	12,365	-	12,365	
	3	2,766	-1	986	
			-2	986	
			-3	794	
	4	2,232	-1	371	
			-2	376	
			-3	380	
			-4	380	
			-5	362	
			-6	363	
	5	3,180	-1	296	
			-2	309	
			-3	316	
			-4	324	
			-5	323	
			-6	323	
			-7	325	
			-8	325	
			-9	324	
			-10	315	
	6	3,832	-1	475	
			-2	465	
			-3	483	
			-4	483	
			-5	478	
			-6	478	
			-7	485	
		-8	485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관광휴양상업2단지	7	3,850	-1	684	
			-2	687	
			-3	687	
			-4	677	
			-5	1,115	
	8	4,017	-1	718	
			-2	743	
			-3	743	
			-4	698	
			-5	1,115	
	9	4,118	-1	945	
			-2	936	
			-3	948	
			-4	1,289	
	10	2,668	-1	332	
			-2	329	
			-3	332	
			-4	330	
			-5	329	
			-6	328	
			-7	328	
			-8	360	
	11	3,091	-1	306	
			-2	311	
			-3	316	
			-4	316	
			-5	316	
			-6	316	
			-7	316	
			-8	316	
			-9	301	
			-10	277	
	12	4,302	-1	482	
			-2	482	
			-3	482	
			-4	482	
			-5	482	
			-6	482	
			-7	482	
			-8	482	
			-9	446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관광휴양상업3단지	1	10,301	-1	1,200			
			-2	863			
			-3	867			
			-4	869			
			-5	869			
			-6	873			
	2	12,109	-1	6,140			
			-2	5,969			
			3	46,055	-1	9,114	
					-2	15,302	
					-3	16,014	
			-4	5,625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근생1	1	1,691.5	-1	209.4	
			-2	210.3	
			-3	210.4	
			-4	210.3	
			-5	213.5	
			-6	211.4	
			-7	212.4	
			-8	213.8	
근생2	1	715.3	-1	234.1	
			-2	227.8	
			-3	253.4	
	2	468.8	-1	234.9	
			-2	233.9	
	3	575.6	-1	290.2	
			-2	285.4	
			4	834.2	-1
-2	208.5				
-3	208.7				
-4	208.5				
근생3	1	891.2	-1	224.3	
			-2	224.3	
			-3	224.4	
			-4	218.2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근생4	1	705.2	-1	235.1	
			-2	235.1	
			-3	235.0	
근생5	1	239.0	-1	239.0	
	2	1,032.0	-1	258.0	
			-2	258.0	
			-3	258.0	
			-4	258.0	
	3	453.0	-1	227.0	
			-2	226.0	
근생6	1	445.0	-1	229.0	
			-2	216.0	
	2	681.0	-1	227.0	
			-2	227.0	
			-3	227.0	
근생7	1	748.0	-1	249.0	
			-2	248.0	
			-3	251.0	
근생8	1	4,486.5	-1	4,486.5	
	2	2,008.5	-1	664.9	
			-2	665.0	
			-3	678.6	
	3	3,856.5	-1	964.0	
			-2	964.0	
			-3	964.2	
			-4	964.3	
	4	4,580.2	-1	457.5	
			-2	457.9	
			-3	458.0	
			-4	457.8	
			-5	458.9	
			-6	459.0	
			-7	457.7	
			-8	458.0	
			-9	458.0	
			-10	457.4	
	5	1,619.8	-1	404.8	
			-2	405.1	
		-3	404.9		
		-4	405.0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공업무1단지	-	27,904.6	-1	4,752.0	
			-2	6,652.6	
			-3	16,500.0	
공공업무2단지	-	2,631.0	-1	651.0	지역정보센터
			-2	660.0	
			-3	660.0	
			-4	660.0	
공공업무3단지	-	6,498.0	-	6,498.0	
공공업무4단지	-	2,665.9	-	2,665.9	
공공업무5단지	-	1,650.0	-	1,650.0	
공공업무6단지	-	5,159.0	-	5,159.0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산업연구용지	1	21,587	-1	10,853	R&D
			-2	10,734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가.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유1	-	3,150.0	-	3,150.0	
유2	-	2,216.0	-	2,216.0	
초1	-	15,156.4	-	15,156.4	
초2	-	14,729.0	-	14,729.0	
초3	-	16,285.0	-	16,285.0	
중1	-	16,080.0	-	16,080.0	
중2	-	15,292.3	-	15,292.3	
고	-	17,065.0	-	17,065.0	

나.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종교1	-	771.0	-	771.0	
종교2	-	1,089.0	-	1,089.0	
종교3	-	1,750.0	-	1,750.0	
종교4	-	947.0	-	947.0	
종교5	-	754.0	-	754.0	

다.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의료1	-	19,543	-	19,543	
의료2	-	13,206	-	13,206	

라. 어항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어항	-	1,066	-	1,066	

마. 마리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리나1	-	21,533	-	21,533	
마리나2	-	3,626	-	3,626	
마리나3	-	1,910	-	1,910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1	-	17,053.6	-	17,053.6	
주차2	-	5,721.0	-	5,721.0	
주차3	-	1,116.6	-	1,116.6	
주차4	-	446.5	-	446.5	
주차5	-	600.1	-	600.1	
주차6	-	398.2	-	398.2	
주차7	-	182.4	-	182.4	
주차8	-	406.5	-	406.5	
주차9	-	402.7	-	402.7	
주차10	-	1,042.9	-	1,042.9	
주차11	-	1,743.0	-	1,743.0	
주차12	-	441.0	-	441.0	
주차13	-	413.0	-	413.0	
주차14	-	793.0	-	793.0	
주차15	-	459.0	-	459.0	
주차16	-	866.0	-	866.0	
주차17	-	3,777.0	-	3,777.0	
주차18	-	3,014.0	-	3,014.0	
주차19	-	2,261.0	-	2,261.0	
주차20	-	4,193.8	-	4,193.8	

사. 수도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배수지1	-	7,566.0	-	7,566.0	
배수지2	-	1,343.0	-	1,343.0	
배수지3	-	400.0	-	400.0	
오수중계	-	2,031.1	-	2,031.1	오수중계펌프장

아.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문화시설	-	2,405	-	2,405	

자. 노유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노유자1	-	622.8	-	622.8	
노유자2	-	1,547.0	-	1,547.0	

차. 에듀파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에듀파크	-	11,626	-1	7,120	
			-2	4,506	

카. 마을회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을회관1	-	298.6	-	298.6	
마을회관2	-	279.5	-	279.5	
마을회관3	-	296.9	-	296.9	
마을회관4	-	229.0	-	229.0	
마을회관5	-	288.4	-	288.4	
마을회관6	-	232.0	-	232.0	

타. 마을공동작업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을공동작업소	-	6,240.0	-	6,240.0	

파. 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통신시설	-	233.2	-	233.2	

##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 단독주택(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 모든 필지는 필지의 분할은 금지하고, 필지의 합병은 1회에 한하여 2개의 필지내에서 허용한다.	
		건축물의 용도	대 지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 참조(괄호 안은 해당 필지 번호임)  ■ 용도표시(D1) 및 적용 · 단독1단지 : 1(3,4),3(1~3),5(8~12),6(2~5,8~12),10(2~8),11(2~8),14,15블럭-47필지 · 단독3단지 : 4,5,6(5~8),7,8(2~4,5~7),9(2~8),10(2~9),11(2~10)블럭-56필지 · 단독3단지 : 2(7~12),3(1~7,10~16),4,6(1~3)블럭-33필지 · 단독4단지 : 3,4,11,12블럭-29필지 · 단독5단지 : 3,4블럭-25필지 · 단독6단지 : 1A(1~8,11~18),2A(1~6,8~12),5A(2~6,9~14),6A(2~6,9~13),9A(2~8,11~17), 10B(2~14)블럭-75필지 · 단독7단지 : 2,3(1~4,7~10),4(1~4,7~10),5(1~6,9~14)블럭-36필지 · 단독8단지 : 2(6~9),3(2)블럭-5필지 ■ 용도표시(D2) 및 적용 · 단독1단지 : 1(1,2),2,3(4),4(1~3),5(1~7,13),6(1,6,7,13),7,8,9(1~5),10(1,9),11(1,9),12,13, 16,17블럭-63필지 · 단독2단지 : 1,2,3,6(1~4,9),8(1,8),9(1,9),10(1,10),11(1,11),12,13,14블럭-52필지 · 단독3단지 : 1,2(1~6),3(8,9),5,6(4~8)블럭-22필지 · 단독4단지 : 1,2,5,6,7,8,9,10,13,14블럭-47필지 · 단독5단지 : 1,2,5블럭-31필지 · 단독6단지 : 1A(9,10),2A(7),3A,4A,5A(1,7,8,15),6A(1,7,8),7A,8A,9A(1,9,10,18),10B(1,15), 11B,12B블럭-53필지 · 단독7단지 : 1,3(5,6),4(5,6),5(7,8),6,7블럭-21필지 · 단독8단지 : 1(1~18),2(1~5,10),3(1,3~5)블럭-28필지
			허용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를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는 불허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를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는 불허한다.
		건축물의 규모	세대수	·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3세대 이하로 한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높 이	· 3층 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4층까지 가능) -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수립전 기허가된 필지는 예외로 함(해당 용도지역상 건축물 입지기준 적용)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괄호 안은 해당 필지 번호임) · 각 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지침도 참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와 같이 조성한다.
건축선	· 점포주택 건축한계선 1m 지정 - 단독1단지-1,7블럭의 20m도로변, 8,9블럭의 가구 단변 - 단독2단지-12블럭의 10m진입도로변 - 단독3단지-1블럭의 20m도로변 - 단독4단지-1,2,5,6,7,8,9,13,14블럭의 가구 단변 - 단독5단지-1블럭의 22m도로변 - 단독6단지-3A블럭의 15m진입도로변, 3A,7A,11B블럭의 22m도로변, 4A블럭의 12m도로변, 4A,7A,8A,11B블럭의 10m진입도로변, 9A,12B블럭의 15m진입도로변 - 단독7단지-6,7블럭의 15m도로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p>■ 주차장의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주택 및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p>■ 주차장의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p>① 지 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li> <li>·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li> <li>·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규제하며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지붕을 설치해야 한다)</li> </ul> <p>② 외 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li> <li>·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p>■ 주차장의 설치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설치한다.</li> </ul>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li> <li>·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li> </ul>	

나. 구릉지주택(변경)

1) 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 모든 대지는 필지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 ■ 용도표시(D3) 및 적용 · 구릉지 1단지, 2단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세대수	·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필지 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 및 합병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 ■ 용도표시(D3) 및 적용 · 구릉지 1단지, 2단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세대수	·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기준</li> <li>· 구릉지구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의 형태</li> <li>·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건축물의 배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li> <li>-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li> <li>-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테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li> <li>·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등의 설치는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p>① 지 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li> <li>·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li> <li>·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함)</li> </ul> <p>② 외 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자재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권장한다.(목재, 자연석 활용 등)</li> <li>·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li> <li>·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열은색을 권장한다.</li> </ul>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li> <li>-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li> <li>-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테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li> <li>·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 등의 설치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li> <li>· 건축한계선으로부터 0.5m 이격하여 배치하고 특별계획구역 조서를 준수하도록 한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내 건축한계선 2.0m 이상을 보행자도로로 확보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1단지 소로1-296, 소로1-297, 소로2-923 도로변</li> <li>· 구릉지2단지 소로1-295 우측 도로변</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li> <li>·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li> </ul>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 아파트(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b>■ 용도표시(A1) 및 적용</b> · 아파트1-1단지 ·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5-1단지 · 아파트5-2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주택유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b> · 아파트2-1단지 ·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b>■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b> · 아파트1-1단지 · 아파트1-2단지 · 아파트5-1단지 · 아파트5-2단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아파트6-2단지, 아파트7단지	150% 이하
				· 아파트4단지, 아파트6-1단지	180% 이하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20% 이하
			건폐율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0% 이하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25% 이하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30% 이하
			높 이	· 아파트6-2단지	12층 이하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7단지	15층 이하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5층 이하
				· 층수제한의 예외(12층제한) - 아파트 3-1, 3-2단지의 보행자도로변(30m) · 층수제한의 예외(7층제한) - 아파트 6-1단지의 단독주택변(50m)	
				· 아파트용지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에 표기된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한다.</li> </ul>	
				<b>■ 건축한계선의 지정(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1단지의 20m도로변</li> <li>· 아파트 2-1단지의 22m도로변</li> <li>· 아파트 3-1, 3-2단지의 20m, 30m도로변</li> <li>· 아파트 4단지의 22m도로변</li> <li>· 아파트 5-1단지의 22m도로변</li> <li>· 아파트 6-1, 6-2단지의 22m도로변</li> <li>· 아파트 7단지의 22m도로변</li> </ul>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직각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 내에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li> <li>·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math>\pm 22.5^\circ</math> 범위내의 배치한다.</li> <li>-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math>\pm 45^\circ</math> 범위내의 배치한다.(시행지침 제28조 참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2-1, 2-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4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5-1, 5-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6-1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6-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7단지의 30m도로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2-1, 2-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4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5-1, 5-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6-1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6-2단지의 30m도로변</li> <li>· 아파트 7단지의 30m도로변</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b>■ 층수차이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li> </ul>	
				<b>■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b>	
				· 6층이상~15층이하, 15층초과(전용면적 60㎡이하)	4호연립 이하
· 15층초과(전용면적 60㎡초과)	2호연립 이하				
<b>■ 주동의 형태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2-1, 2-2, 4단지의 학교부지인접 주동은 학교에 대한 일조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탑상형의 제한</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ul>
			단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관련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 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li> <li>-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li> </ul> </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이하 : 1대/85㎡당</li> <li>- 85㎡초과 : 1대/70㎡당</li> </ul> </li> <li>·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li> <li>·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이하 : 4/10이상</li> <li>- 85㎡초과 : 6/10이상</li> </ul> </li> <li>※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방수 /방습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지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기준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li> <li>·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규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3-1, 3-2단지의 중심부에 최고층수허용지역(20층이하)을 설치한다.</li> </ul>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li> <li>·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li> <li>·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1동의 입면적을 3,50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단,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입면적의 10%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21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20%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li> <li>·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ㄹ,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li> <li>·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의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ul> </li> <li>· 아파트 1층 부분에 개별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이상의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li> <li>-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구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li> <li>-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구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li> </ul> </li> <li>·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li> <li>·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li> <li>·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li> <li>·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물타리를 조성한다.</li> <li>-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li> <li>-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li> <li>-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li> </ul> </li> <li>·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 식재 및 유도식재</li> <li>-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li> <li>-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li> <li>-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쌈지공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따라야 하며 면적은 500㎡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며, 면적의 경우 ±10%이내를 조정범위로 한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응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li> <li>·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li> <li>·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li> </ul>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기타사항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li> <li>-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li> </ul>
			단지내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포장</li> <li>-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li> <li>-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li> <li>· 단지내 보도포장</li> <li>-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li> <li>-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li> </ul>
			친환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반 면적률</li> <li>- 아파트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투수 면적률</li> <li>-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녹지 면적률</li> <li>-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사항을 준용한다.</li> </ul>
			안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li> <li>· 주택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한다.</li> </ul>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li> </ul>
			생활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및 규모</li> <li>-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li> <li>· 배치</li> <li>-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li> </ul>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li> <li>·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li> </ul>
			야간경관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3-1, 3-2단지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li> </ul>

나. 테라스하우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li> <li>· 테라스하우스용지는 동일 사업자의 경우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li> </ul>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이하(허용용적률)</li> <li>· 테라스하우스 계획세대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건축시 건축구조에 따라 세대수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건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용적률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조정(상향)이 가능토록함(단, 세대수 증가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li> </ul>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li> <li>-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li> </ul> </li> <li>· 공동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도로와 같은 레벨로 지하부분에 주차하도록 한다.</li> </ul>
			단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이하 : 85㎡당 1대, - 85㎡초과 : 70㎡당 1대</li> </ul> </li> </ul>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입·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향위주의 배치로 하며, 해안으로의 조망권을 극대화하는 단차형으로 각 세대를 배치하여야 한다.</li> <li>· 건물 1동의 전면길이는 6호 주택 이내가 되도록 한다.</li> <li>· 혼합형(연립형+테라스형)일 경우 연립형 주택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li>· 테라스하우스 형태일 경우 중첩비를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등을 고려 각 세대의 깊이를 6m 이하로 권장</li> </ul> </li> <li>· 건축물의 지붕에는 옥상조경을 하여 윗 세대의 외부공간으로 활용 권장</li> <li>· 건축물의 최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와 도로사이의 프라이버시 확보 권장</li> <li>·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 할 수 있을 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 높이를 유지하고 최대 3.2m이내를 권장한다.</li> <li>·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층주거의 옥상을 상층주거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지붕형태 유도</li> <li>-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li> <li>·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할 수 있을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의 높이차가 적정하다.(최대 3.2m이내 권장)</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li> <li>-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li> <li>-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li> </ul> </li> <li>·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 참조</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의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li> <li>· 단지내 도로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li> </ul>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용 계단은 등고선에 수직으로 배치하여 주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단위 주거 사이의 보행통로는 채광, 환기 등이 가능하게 배치한다.</li> </ul>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ब्ल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대지를 기준하여 1.5m이하로 한다.</li> </ul> </li> </ul>
			친환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반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라스하우스용지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투수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녹지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li> </ul> </li> </ul>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li> </ul>			

다. 타운하우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타운하우스용지는 동일 사업자의 경우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4 참조 ■ 용도표시(A4) 및 적용 · 타운하우스 1,2단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20%이하
			건폐율	· 35%이하
			높 이	· 4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내용 은 지침도면 참조)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4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타운하우스1,2단지의 30m도로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층수차이 제한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
				■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
· 6호 연립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관련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 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li> <li>· 단지내 도로와 단지의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li> <li>-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li> </ul> </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이하 : 85㎡당 1대</li> <li>- 85㎡초과 : 70㎡당 1대</li> </ul> </li> <li>·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li> <li>·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초과 : 6/10이상</li> </ul> </li> <li>※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방수 /방습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지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기준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li> <li>·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li> <li>·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li> <li>·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ㄹ,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li> <li>·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ul> </li> <li>· 통경 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 이상의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li> <li>-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li> <li>-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li> </ul> </li> <li>·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li> <li>·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li> <li>·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물타리를 조성한다.</li> <li>-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li> <li>-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li> <li>- 하나의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li> </ul> </li> <li>·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li> <li>-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li> <li>-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li> </ul> </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li> </ul>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응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li> <li>·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li> <li>·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li> </ul>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기타사항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li> <li>-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li> </ul>
			단지내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포장</li> <li>-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li> <li>-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li> <li>· 단지내 보도포장</li> <li>-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li> <li>-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li> </ul>
			친환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반 면적률</li> <li>- 타운하우스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투수 면적률</li> <li>-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녹지 면적률</li> <li>-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li> </ul>
			안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li> <li>· 타운하우스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도록 권장한다.</li> </ul>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li> </ul>
			생활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및 규모</li> <li>-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li> <li>· 배치</li> <li>-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li> </ul>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li> <li>·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li> </ul>
			야간경관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li> </ul>

■ 공동주택 주택건설계획

구 분	주 택 유 형	면 적 (㎡)	세대수 (호)
계	-	486,349.1	8,441
아파트1-1단지	C	32,276.6	614
아파트1-2단지	C	35,356.5	672
아파트2-1단지	A	29,820.0	662
아파트2-2단지	A	33,649.0	746
아파트3-1단지	A	24,490.2	543
아파트3-2단지	A	31,828.8	706
아파트4단지	A	32,332.0	587
아파트5-1단지	C	31,991.0	608
아파트5-2단지	C	23,446.0	446
아파트6-1단지	A	64,222.0	1,166
아파트6-2단지	A	29,805.0	451
아파트7단지	A	15,338.0	232
타운하우스	C	65,000.0	538
테라스하우스	C	36,794.0	470

주) 1. A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B :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C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복합)

3. 상업용지(변경없음)

가. 지구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대지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li> <li>·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li> <li>·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li> </ul>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표시(C1)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li> </ul> </li> <li>■ 용도표시(C2)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중심상업 1단지-1,3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2,3,4,5,6,7블럭</li> </ul> </li> </ul>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7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최저층수 : 3층이상	
		· 최고층수 :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2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3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4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5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6블럭</li> <li>· 지구중심상업 2단지-7블럭</li> </ul>		3m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지정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2층이상의 벽면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지정선에 2/3이상 접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지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4m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형 태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건물과 조화			
		- 연결된 대지에 먼저 건축한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축건물이 연결대지의 먼저 건축한 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도 먼저 건축한 건물과 일치시켜야 한다. 좌우 양측 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펫)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면					
·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구중심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의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li> <li>·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가로변 및 각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조성방식은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보행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중심상업용지내 보행데크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2층부분에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1층부는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li> <li>· 보행데크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웅천공원 순환도로(대로), 상업지 내부도로((소로)를 횡단하는 보행교량과 연계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고, 데크의 상부바닥마감 높이와 전체적인 형태 및 재질은 공공에서 설치하는 보행교량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이어야 한다.(지구단위계획보고서 경관계획편 참조)</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외벽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li> </ul> </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내 조경	쌘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에서 쌘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쌘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li> <li>· 쌘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li> <li>· 쌘지공원의 위치는 각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li> <li>· 쌘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li> <li>· 쌘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 이 되어야 한다.</li> <li>· 쌘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 여야 하며 가로변 및 각각부에 쌘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 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i> </ul>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li> <li>·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li> </ul>
		기타사항	주차장	·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의 공동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 장한다.

나. 관광·휴양상업용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li> <li>·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li> <li>·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 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li> <li>·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li> </ul>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가능한 용도로 보며, 가급적 권장용도를 준수토록 한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6 참조 ■ 용도표시(C3)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1,2,6(-1)블럭 ■ 용도표시(C4)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용도표시(C5)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3~5,6(-2)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3,7(-5),8(-5),9블럭 ■ 용도표시(C6)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2단지-4~7(-1~4)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8(-1~4),10~12블럭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4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500%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건폐율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	700%이하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40%이하
				· 관광휴양상업3단지-2블럭	6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	70%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높 이	· 관광휴양상업3단지-1블럭	80%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 관광휴양상업1단지-6블럭(최고층수제한)	29층이하
		· 관광휴양상업3단지-2,3블럭(최고층수제한)		10층이상	
		· 관광휴양상업1단지-1,2블럭(최저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1단지-3블럭(최고층수제한)		10층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최고층수제한)		7층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3단지-1블럭(최고층수제한)	5층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최고층수제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1m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 관광휴양상업1단지-1,6블럭	2m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3m				
· 관광휴양상업2단지-3,6,7,8,9,12블럭					
· 관광휴양상업1단지-2,3블럭	5m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li> </ul>
				<p>■ 건축물의 외벽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면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i> </ul> </li> <li>·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li> <li>·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li> <li>· 투시형 셔터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5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설치시에 한한다)</li> </ul> </li> </ul> <p>· 관광휴양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p>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li> <li>·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li> </ul> </li> </ul>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li> <li>·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조성방식은 시행지침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ath>m^2</math>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math>1,000m^2</math>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외벽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외벽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li> </ul> </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내 조경	쌈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에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쌈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li> <li>· 쌈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li> <li>· 쌈지공원의 위치는 각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li> <li>·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li> <li>· 쌈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 이 되어야 한다.</li> <li>· 쌈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가로외벽 및 각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 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i> </ul>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li> <li>·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li> <li>· 단, 웅천공원과 접하는 중대형 필지(관광휴양상업1단지 2, 3블록, 2단지 1, 2블록, 3단지 2, 3블록)는 제외한다.</li> </ul>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야간경관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li> <li>· 관광휴양사업단지 모든 필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li> </ul>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li> <li>·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li> <li>·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li> <li>·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li> </ul>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7 참조</li> <li>■ 용도표시(N)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생1단지      · 근생2단지</li> <li>· 근생3단지      · 근생4단지</li> <li>· 근생5단지      · 근생6단지</li> <li>· 근생7단지      · 근생8단지</li> </ul> </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생1~7 : 150%</li> <li>· 근생8 : 350%</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생1~7 : 60%</li> <li>· 근생8 : 70%</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생 1~7 : 3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층이하)</li> <li>· 근생8 : 5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6층이하)</li> </ul>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1m
			· 근생8단지-1블럭, 2블럭	3m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비슷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마감 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0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li> </ul> </li> </ul>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li> <li>· 지붕위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난방, 냉방설치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li> </ul> </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li> <li>· 전면공지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관련 시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li> </ul> </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로 부근의 교통혼잡방지, 이면도로이용 유도를 위해 교차로 부분의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며, 차량진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차량진·출입을 허용한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li> </ul>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주차는 보행안전 및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동 주차통로를 확보한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li>- 법정 주차산정대수의 10%이상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외부차량이용 및 공지로 활용한다.</li> </ul>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지내 담장 및 대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종류의 재료 및 시각적 지배를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동일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li> </ul>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8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표시(O1) 및 적용</li> <li>· 공공업무1단지</li> <li>· 공공업무6단지</li> <li>■ 용도표시(O2) 및 적용</li> <li>· 공공업무3단지</li> <li>· 공공업무4단지</li> <li>■ 용도표시(O3) 및 적용</li> <li>·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li> <li>· 공공업무5단지</li> </ul>			
			용적률	· 공공업무1단지		500%이하
		· 공공업무3단지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공공업무6단지		350%이하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높 이	높 이	· 공공업무4단지		70%이하
				· 공공업무5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공공업무1단지		10층이하
				· 공공업무3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공공업무6단지		5층이하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공공업무4단지		5층이하		
		· 공공업무5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5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공공업무3단지		5m		
		· 공공업무4단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li>·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2호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li> </ul>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 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여야 함다.</li> <li>·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li> <li>·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상징적 건축물 입지 권장</li> <li>· 건축물의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로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li> </ul> </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li>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하되 백색계통의 열은색을 권장.</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조명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9 참조			
			■ 용도표시(I) 및 적용 · 산업연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산업연구시설 30m도로변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p>·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p>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붕형 권장</li> <li>· 투시형 담장 권장</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li> </ul>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li> <li>·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가. 학교(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 여 관련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유1, 초1~3, 중1~2, 고 : 100%이하		
				· 유2 : 200%이하		
			건폐율	· 유1, 초1~3, 중1~2, 고 : 20%이하		
		· 유2 : 50%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높 이	· 4층이하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유치원1 · 초등학교 1, 초등학교 2, 초등학교 3 · 중학교 1, 중학교 2 · 고등학교 1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 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공지	차폐식재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교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ath>m^2</math>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ath>m^2</math>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범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li> <li>·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중교 1,2,3,4,5	지침도상의 중교 1,2,3,4,5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의료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용도표시(H1,H2) 및 적용 · 의료시설1,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의료시설용지	5m
			건축배치	· 의료시설1단지의 30m도로변측으로는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병상은 최대 한 도로와 이격하여 배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 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 을 권장한다.
		옥상녹화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어항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3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분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마리나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용도표시(M) 및 적용 · 마리나1,2,3
		건축물의 규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3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 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 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용도표시(P1) 및 적용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 용도표시(P2) 및 적용 · 주차장4~9, 주차장12~16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주차장17, 주차장19	100%이하
				· 주차장1	300%이하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350%이하
				· 주차장2, 주차장18	400%이하
			건폐율	· 주차장17, 주차장19	20%이하
				· 주차장1	50%이하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70%이하
		· 주차장2, 주차장18	80%이하		
높 이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5층이하 (단 1개층 높이는 4m이상 유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문화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7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li> </ul>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노유자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연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기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에듀파크(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 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sup>2</sup>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li> <li>·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건물면적이 1,000m<sup>2</sup>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분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마을회관(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2)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li> <li>·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li> </ul>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카. 마을공동작업소(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공동 작업소	지침도상의 마을공동 작업소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3층이하

타. 통신시설(변경없음)

1)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통신	지침도상의 통신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통신	지침도상의 통신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 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li> <li>-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li> </ul> </li> </ul>

③ 특별계획구역 지정계획(신설)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구릉지 1,2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	증)62,493	62,493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유
신설	구릉지 1,2단지	특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계획구역</li> <li>- 신설: 증)62,49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 주택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특화된 경관형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li> </ul>

2.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구릉지 1,2단지	지정 목적	· 구릉지지형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디자인 반영
		지정 대상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웅천동 1818-8번지 일원(1단지), 웅천동 1814-14번지 일원(2단지)</li> <li>· 면 적: 62,493㎡(신설)</li> <li>· 용도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li> </ul>
		개발 방향에 관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구역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일괄 시행토록 함 (웅천동 1819-4, 1819-8, 1819-9, 1814-24, 1814-25 제외)</li> </ul> </li> </ul>

### 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li> <li>·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 및 합병할 수 있다.</li> </ul>
		건축물의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li> <li>■ 용도표시(D3) 및 적용</li> <li>· 구릉지 1단지, 2단지</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세대수	·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 서는 제외)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 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li>·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주차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li> <li>-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데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li> </ul> </li> <li>·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등의 설치는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획지내 건축한계선 2.0m 이상을 보행자도로로 확보하여야 한다.	
				· 구릉지1단지 소로1-296, 소로1-297, 소로2-923 도로변 · 구릉지2단지 소로1-295 우측 도로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① 지 붕 ·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함) ② 외 벽 · 건축자재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권장한다.(목재, 자연석 활용 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행방법 ·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조서를 준수하여 시행토록 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 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			

※ 세부개발계획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 건축예시도 : 계획생략

- 건축예시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가능

4]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별표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단독주택	점포주택	
도면표시	D1	D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 1필지당 3세대 이하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 점포주택의 경우 지상 1층에 한하여 점포 설치 (연면적의 5분의2 범위 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2 : 구릉지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도면표시	D3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공관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3 : 아파트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도면표시	A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지자채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4 : 테라스하우스 및 타운하우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도면표시	A3	A4	A3	A4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지자채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5 : 지구중심상업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1	C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li> </ul>	
불 허 용 도	1층	C1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li> </ul>	-
	전층	C1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li> </ul>

※ C1, C2(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별표6 : 관광·휴양상업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3	C4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고시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고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 C3(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탁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C4(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5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li> </ul>		
불 허 용 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li> </ul>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및 고시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 C5(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C5(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탁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6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li> </ul>	
불 허 용 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li> </ul>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li> </ul>

※ C6(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허용하지 않음</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별표8 :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1,6	업무시설3,4	업무시설2,5
도면표시	O1	O2	O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별표9 : 산업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li> </ul> </li>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허용하지 않음</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별표10 :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유치원1,2	초등학교1,3	초등학교2	중학교1,2	고등학교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종교, 의료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교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도면표시	H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li> </ul> </li> </ul> <p>•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p>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도면표시	H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li> </ul> </li> </ul> <p>•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p>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어항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어항시설
도면표시	어항
허용용도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의 어항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마리나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마리나시설
도면표시	M
허용용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및 부대관련시설 (부대관련시설이라 함은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주차장	
도면표시	P1	P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문화 및 노유자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도면표시	문화	노유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에듀파크 및 마을회관(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에듀파크	마을회관
도면표시	에듀파크	회관
허용용도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마을공동작업소(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마을공동작업소
도면표시	마을공동작업소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통신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통신시설
도면표시	통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1 : 건축물 색채계획표(변경없음)

■ 색채 용어의 정의

구 분	정 의
주 조 색 (Base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깔
보 조 색 (Sub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강 조 색 (Accent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 건축물 부위별 색채적용의 예

구 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외벽 측면	●	△	△
외벽 전면	●		
외벽 후면	●(복도난간포함)	●(복도안쪽)	△
발코니 외벽		●	△
발코니 내부 측면		●	△
발코니 내부 천정		●	●
발코니 난간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과 접한 발코니 외벽 측면	△	●	●
지붕		●	
옥탑 외벽	△	●	
돌출된 수위실 외벽	△	●	●(부분적)
캐노피		●	●
처마홈통, 선홈통		●	
외벽후면 세대별 출입문		●	●
외벽 후면 가스파이프			●

## VI.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조 항	기 정	변 경
제2장 구릉지 주택용지 제1조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 및 합병할 수 있다.

※ 구릉지주택용지 변경 외 그 밖의 사항 변경없음

### ■ 특별계획구역 건축예시도 : 게재생략

- 건축예시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가능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6.

## 여 수 시 장

### ○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04-1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5-7	202205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12-3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52-3 (학동)	202205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참무리 504-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참무2길 21-112	202205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가장리 2004-5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가장문화길 15-3	202205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85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2길 28	202205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1-63 (21. 8. 23.)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10-12번지 일원	192	'22. 5. 9.	화정면 사도 방파제 연장공사

2022. 5. 9.

여 수 시 장

## 도로구간(종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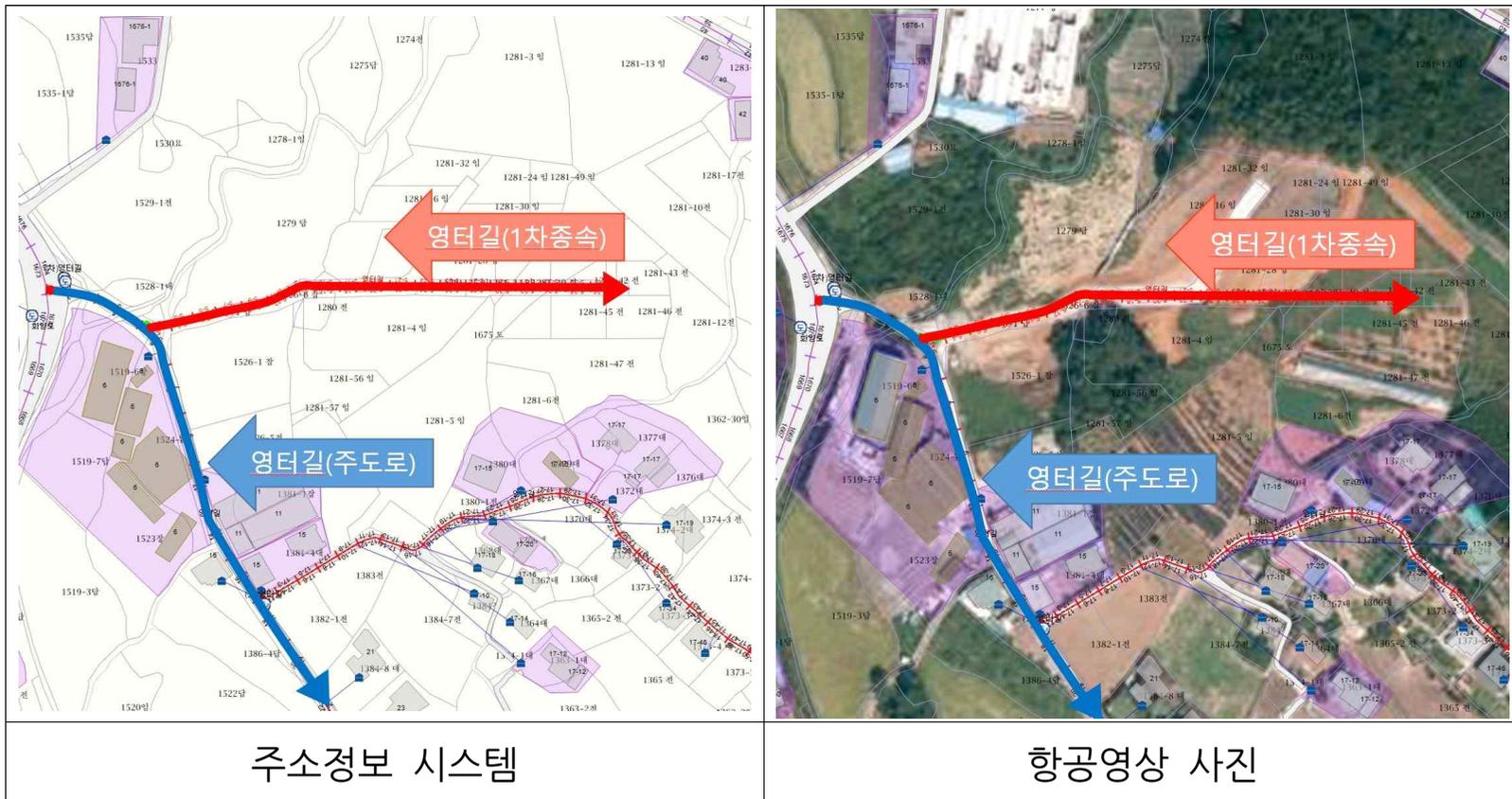
### 여 수 시 장

1. 고 시 일 : 2022년 5월 9일
2.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영터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부.

##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m)	폭(m)	기초간격(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영터길	길	신규	화양면 용주리 1519-2	화양면 용주리 1281-42	5-1	5-40	187	5	10	2022.5.9	1차 중속구간 신규 설정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6.

###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동산동 427-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57)사업
  - 나. 명 칭: 전라좌수영 동헌 외곽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기정 840㎡**→ 변경 846㎡(증 6㎡)
  - 나. 규 모: L=95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1.31.~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다음

####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457	8	국지 도로	90	소3-22 동산동 325대	소2-463 동산동 487대	일반 도로	여고-168 18. 6. 7.	
기정	소로	2	1457	8	국지 도로	90	소3-22 동산동 325대	소2-463 동산동 487대	일반 도로	여고-168 18. 6. 7.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1457	소로2-1457	◦ 면적변경 : 증) 6㎡ - 기정 : 768㎡ - 변경 : 774㎡	◦ 곡선부 차량 시거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각부 면적 변경

#### 8. 공람기간 : 2022. 5. 6. ~ 2022. 5.20.(14일간)

9. 공람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1	동산	485-5	도	118	118		국토교통부				기정
1-1	동산	485-5	도	118	118	여수시	여수시				변경
1-2	동산	485-8	도	15	15		국토교통부				기정
1-2	동산	485-8	도	15	15	여수시	여수시				변경
2	동산	486	수	69	1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3	동산	487	대	36	36	이남순	동정 1150-10				기정
3	동산	487	대	36	36	여수시	여수시				변경
4	동산	488	대	17	17		기획재정부				기정
4	동산	488	대	17	17	여수시	여수시				변경
5	동산	489-1	대	1	1		기획재정부				기정
5	동산	489-1	대	1	1	여수시	여수시				변경
6	동산	491-1	대	17	17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7	동산	492-1	대	6	6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8	동산	493-1	대	12	12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9	동산	498	수	245	2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10	동산	323-1	대	2	2	송철희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산219				기정
10	동산	323-1	대	2	2	여수시	여수시				변경
11	동산	324-1	대	60	60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12	동산	325-1	대	56	56	박영자	여수시 동산동 325				기정
12	동산	325-1	대	56	56	여수시	여수시				변경
13	동산	327-4	대	16	16	강대중	여수시 봉계동 16 아주타운 104동 604호	동산새마을 금고	여수시 동산동 372	근저당권 설정	기정
13	동산	327-4	대	16	16	여수시	여수시				변경
14	동산	437-1	대	7	7	임호준	여수시 오림4길 11(오림동)				기정
14	동산	437-1	대	7	7	여수시	여수시				변경
15	동산	436-1	대	35	35	임호준	여수시 동산1길 8-2(동산동)				기정
15	동산	436-1	대	35	35	여수시	여수시				변경
16	동산	435-1	대	24	24	정경춘	여천시 응천동 521				기정
16	동산	435-1	대	24	24	여수시	여수시				변경
17	동산	434-1	대	15	15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18	동산	433-1	대	4	4		기획재정부				기정
18	동산	433-1	대	4	4	여수시	여수시				변경
19	동산	431-1	대	56	56	여수시	여수시				변경없음
20	동산	430-1	대	43	43	박석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47-1 호반맨션 -1610				기정
20	동산	430-1	대	43	43	여수시	여수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동산	429-1	대	13	13	장기용	여주시 동산동 429	여수농협	여주시 좌수영로 355(문수동)	근저당권 설정	기정
21	동산	429-1	대	13	13	여주시	여주시				변경
22	동산	428-1	대	98	98	장호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전두1길 10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6(궁동)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기정
22	동산	428-1	대	98	98	여주시	여주시				변경
23	동산	427-5	중	84	84	홍이자	여주시 진남로 97 (동산동)				기정
23	동산	427-5	중	84	84	여주시	여주시				변경
24	동산	427-6	대	32	32	홍이자	여주시 진남로 97 (동산동)				기정
24	동산	427-6	대	32	32	여주시	여주시				변경
25	동산	425-2	도	598	67	여주시	여주시				변경없음
26	동산	446-2	대	1	1	김성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정갈2길 16(구성동)	이원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62번길86, 102동 402호 (원중동, 성지빌라트)	근저당권 설정	기정
26	동산	446-2	대	1	1	여주시	여주시				변경
27	동산	477	도	1,094	2	여주시	여주시				변경없음
28	동산	430-2	대	1	1	여주시	여주시				
29	동산	432-1	대	1	1	여주시	여주시				
30	동산	433-2	대	3	3		기획재정부				
31	동산	434-2	대	1	1	여주시	여주시				
소 계		28필지		2,774	840						기정
소 계		32필지		2,780	846						변경

○ 지장물조서(변경)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여수시 동산동	427-5	담장	조적(34.6*1.4)	34.60	m	홍이자	여수시 진남로 97 (여수시 동산동)	중앙새마을금고	여수시진남로97 (여수시동산동)	근저당	기정 변경	
			427-1	주택1층	철근 콘크리트	62.71							m <sup>2</sup>
		주택2층	철근 콘크리트	72.71	m <sup>2</sup>								
		창고	조립식	12.2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59.40	m <sup>2</sup>								
		화단	3식	44.34	m <sup>2</sup>								
		수도계량기		1	식								
		빨래건조대		1	식								
		정화조		1	식								
		현관등		4	식								
		가추	(1.6*4.2)	1	식								
		실내계단	나무17단	1	식								
		수도		1	식								
		대문	철재(2.8*1.2)	1	식								
		향나무		9	주								
		편백나무		4	주								
		소나무		6	주								
동백나무		2	주										
기타나무		1	주										
2	여수시 동산동	428	담장	블록(11.4*1.8)	11.40	m	장호준	나주시동방1길56				기정 변경	
			물탱크	콘크리트	2	식							여수시
			동백나무		1	식							
			야자수		2	식							
			사철나무		1	식							
			감나무		1	식							
			팔손이		1	식							
3	여수시 동산동	431	주택1층	블록, 함석	41.64	m <sup>2</sup>	조희순	전남여수시진남로97-6 (여수시동산동)			기정 변경		
			주택2층		7.96	m <sup>2</sup>						여수시	
			다락		7.14	m <sup>2</sup>							
			화장실		6.40	m <sup>2</sup>							
			가추	슬레이트	9.92	m <sup>2</sup>							
			바닥포장	콘크리트	6.38	m <sup>2</sup>							
			대문차광	콘크리트	3.25	m <sup>2</sup>							
			대문	목조	1	식							
			대문	철재(1.1*1.8)	1	식							
			계단	철재9단	1	식							
			계단	콘크리트1단	1	식							
			계단	목조5단	1	식							
			물탱크		1	식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에어컨 빨래건조대 등산이전비		1 식 1 식 1 식						
4	여수시 동산동	430	담장 주거 바닥포장 화장실 대문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보일러 빨래건조대 위성안테나 계단	블록(6.5*2.5) 블록,스레트 콘크리트 블록,슬래브 철재(1.1*2)	16.50 m 26.55 m² 9 m² 4.10 m²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박석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604번길10-1(방림동)  여수시				기정 변경
5	여수시 동산동	429	담장 바닥포장 화장실(창고) 물탱크 계단 철문 등산이전비	블록 콘크리트 벽돌슬래브 철재6단	12.10 m 8.40 m² 1.50 m² 1 식 1 식 2 식 1 식	장기용	전남여수시진남로97-8(여수시동산동)  여수시				기정 변경
6	여수시 동산동	327-3	주택1층 주택2층 화장실 창고 바닥포장 대문 계단 방범창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빨래건조대 등산이전비 연탄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콘크리트 철재(1.3*1.8) 콘크리트9단	35 m² 14.85 m² 2.16 m² 15.98 m² 17.37 m² 1 식 1 식 2 식 1 식 1 식 2 식 1 식 1 식 200 장	강대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능대로718번길7,106동1502(논현동,소래마을풍림아파트)  여수시				기정 변경
7	여수시 동산동	325	담장 주택1층	블록 시멘트벽돌조	5.30 m 51.06 m²	박영자	전남여수시진남로97-6(여수시동산동)  여수시				기정 변경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주택2층	시멘트 벽돌조	34.08	m <sup>2</sup>						
			창고	시멘트 벽돌조	3.04	m <sup>2</sup>						
			화장실	시멘트 벽돌조	2.1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7.60	m <sup>2</sup>						
			석축	찰쌍기(10.3*1)	10.20	m <sup>2</sup>						
			계단	콘크리트3단	1	식						
			계단	콘크리트14단	1	식						
			계단	벽돌1단	1	식						
			다락계단	6단	1	식						
			대문	철재	1	식						
			문	목재	1	식						
			문	철재	5	식						
			에어컨		1	식						
			물탱크		2	식						
			빨래건조대		1	식						
			등산이전비		1	식						
			대문차광	콘크리트(1.4*2)	1	식						
8	여수시 동산동	324	담장	블록(13.2*1.8)	23.76	m	이순신	전남여수시 동산2길14(여수시동산동)				기정
			주거	블록,함석	164.22	m <sup>2</sup>		여수시				변경
			마당	콘크리트	16.96	m <sup>2</sup>						
			석축	찰쌍기(13.2*1)	13.20	m <sup>2</sup>						
			화단		7.82	m <sup>2</sup>						
			대문	철재(1.5*2)	1	식						
			대문차광	2.0*1.0	1	식						
			간판		1	식						
			위성안테나		1	식						
			빨래건조대		1	식						
			전기계량기		2	식						
			수도계량기		1	식						
			등산이전비		1	식						
			물탱크		1	식						
			환풍기		1	식						
			철문		2	식						
			계단	철재8단	1	식						
			계단	콘크리트3단	1	식						
			계단	콘크리트6단	2	식						
			수도		2	식						
			기름보일러		2	식						
			문	알루미늄	6	식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돌담		11.30	m²						
			화단		1.40	m²						
			바닥포장		26.10	m²						
			대문	철재(0.9*1.6)	1	식						
			대문	철재(2.0*1.5)	1	식						
			방범창		2	식						
			수도계량기		1	식						
			전기계량기		1	식						
			빨래건조대		2	식						
			가스통		2	식						
			문	목재	5	식						
			등산이전비		1	식						
			계단	철재7단	1	식						
			계단	블록2단	1	식						
11	여수시 동산동	437	다용도실	목조합석	28.64	m	임호준	전남여수시동산1길8-2 (여수시동산동)				기정 변경
			주택	목조합석	45.41	m²		여수시				
			법당	목조합석	10.80	m²						
			창고	목조합석	8.26	m²						
			담장		23.64	m²						
			대문	철재(1.1*1.7)	1	식						
			대문차양	콘크리트	1	식						
			문	철재	3	식						
			수도		1	식						
			간판		1	식						
			빨래건조대		1	식						
			수도계량기		1	식						
			등산이전비		1	식						
			계단	콘크리트8단	1	식						
			계단	철재11단	1	식						
			계단	콘크리트2단	1	식						
12	여수시 동산동	436	주거	목조합석	41.44	m²	임호준	전남여수시동산1길8-2 (여수시동산동)				기정 변경
			창고	목조합석	1.04	m²		여수시				
			보일러실	목조합석	4.48	m²						
			대문	철재(1.2*1)	1	식						
			가추	1.6.4	1	식						
			담장	11.7*1.3	1	식						
			바닥포장	1.3*7.4	1	식						
			계단	콘크리트11단	1	식						
			계단	콘크리트1단	1	식						
			계단	철재7단	1	식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전기계량기		1	식						
			수도계량기		1	식						
			에어컨		1	식						
			빨래건조대		1	식						
13	여수시 동산동	435	주거	블록, 스레트	37.65	m <sup>2</sup>	정경춘	전남여수시여서로188, 704동509호 (여서동,부영아파트)				기정 변경
			창고		4.62	m <sup>2</sup>		여수시				
			창고		0.90	m <sup>2</sup>						
			화장실		0.81	m <sup>2</sup>						
			바닥포장		4.77	m <sup>2</sup>						
			대문	철재(1.6*0.9)	1	식						
			대문차량	1.0*1.6	1	식						
			가추	2.9*1.6	1	식						
			계단	콘크리트11단	1	식						
			계단	콘크리트1단	1	식						
			물탱크		1	식						
			기름보일러		1	식						
			수도계량기		1	식						
			전기계량기		1	식						
			문	철재	2	식						
			문	목조	1	식						
			감나무		1	주						
14	여수시 동산동	434	주거	블록합석	17.34	m <sup>2</sup>	조수빈	전남여수시동산1길8-2 (여수시동산동)				기정 변경
			법당	블록합석	25.98	m <sup>2</sup>		여수시				
			다용도실	블록합석	18.15	m <sup>2</sup>						
			부엌	블록합석	8.58	m <sup>2</sup>						
			담장	시멘트블럭	6.15	m <sup>2</sup>						
			대문	철재(1.2*1.8)	1	식						
			문	철재	3	식						
			수도계량기		1	식						
			전기계량기		1	식						
			기름보일러		1	식						
			가스통		1	식						
			동산이전비		1	식						
15	여수시 동산동	446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	42.50	m <sup>2</sup>	김성희	충남천안시동남구청골 2길16(구성동)				기정 변경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42.50	m <sup>2</sup>		여수시				
			주택3층	철근콘크리트	42.50	m <sup>2</sup>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13.86	m <sup>2</sup>						
			화단	1.1*3.4	3.74	m <sup>2</sup>						
			담장	6.1*1.5	1	식						

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계단	콘크리트31단	1	식						
			계단	콘크리트1단	1	식						
			계단	철재9단	1	식						
			빨래건조대		2	식						
			실내조명등		1	식						
			문	철재	3	식						
			문	목재	8	식						
			욕상담장	2.9*1.4	3	식						
			나무		3	주						
16	여수시 동산동	449	주택	목조스레이트	40.55	m <sup>2</sup>	김성희	충남천안시동남구청골2길16(구성동)				기정 변경
			창고	벽돌스레이트	1.50	m <sup>2</sup>		여수시				
			화장실	벽돌스레이트	1	m <sup>2</sup>						
			바닥포장	콘크리트	26.21	m <sup>2</sup>						
			대문	철재(0.9*1.6)	1	식						
			대문	철재(2.0*1.2)	1	식						
			계단	콘크리트8단	1	식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22. 5. 6.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원유 및 납사저장탱크 증설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지에스칼텍스(주) 허세홍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여수시 낙포동 1377번지 일원  
나. 면 적: 137,975㎡
4. 준공인가연월일: 2022. 5. 4.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6.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22년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계획 공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우리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지원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 및 취소) 규정에 따라 2022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9.

## 여 수 시 장

### 1. 지정 개요

가. 신청기간 : '22. 5. 9.(월) ~ 5. 27.(금)

※ 목표 지정 개소수 (110개소)

나. 신청대상

- 외식업(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카페, 기타 서비스업)

※ 신청 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서류 제출 후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처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659-3605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 가격 기준(45점)

- 가격 수준(20점) : 지역 평균가격 대비 가격 수준
- 가격 안정 노력(15점)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10점)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 나.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다.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

- 이용만족도 부문(10점)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 운영 및 시설 부문(각 5점)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 라. 공공성 기준(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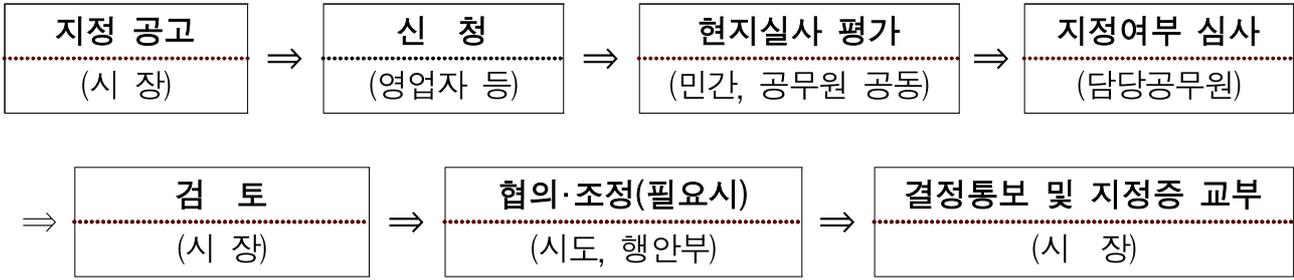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마. 가점 부여 기준(10점)

- 사회공헌 활동(8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표창 사항(2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 지정 기준에 따른 종합 평점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이고,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얻은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

## 3. 지정 절차



### 가. 현지실사 평가

- 민·관 공동으로 현지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나.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현지실사 평가 후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 및 통보(지정증 및 표찰 교부)

### 다. 등록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해당업소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

## 4. 착한가격업소 지원 계획

### 가.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설비, 기자재, 소모품 등 업주가 선호하는 물품 지원(1백만원)
- 떡깨비 썬썬여수 가맹점 등록시 착한가격업소 아이콘 표시 지원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 여수맛, 여수야 어플리케이션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 및 홍보 지원

### 나. 홍보 및 이용활성화

- 시 홈페이지, 거북선 소식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활성화 도모

### 【 붙임 1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b>총 점</b>				<b>100</b>	
<b>※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b>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평균가격 미만(5~1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1년 이상	13	
		가격동결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20%-30%	8		
		10%-20%	5		
위생· 청결 기준 (30점)	주 영 업 시 설 (10점)	주방 등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매장 내 시설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품 질 서 비 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10 중 5 하 -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 점	평점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적약자 배려 등)	8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신기동 74-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 전광일

다. 시 공 자 : 엑스포종합건설(주)

라.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기람이엔지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신기동 74-5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415.5㎡

3) 연 면 적 : 940.56㎡

4)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사무소)

5) 규 모 : 지하1층, 지상 3층 / 1동

6) 공사기간 : 2022. 5. ~ 2022. 10. (6개월)

7) 순공사비 : 1,265,000,000원 (VAT 포함)

8) 안전점검 비용 : 6,000,000 (VAT 포함)

바. 건축허가일 : 2022. 4. 6.

###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 가. 점검종류

- 1) 건설기계<sup>1)</sup>의 정기안전점검 : 각 기계별 2회
- 2) 가설구조물<sup>2)</sup>의 정기안전점검 : 각 구조물별 2회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688호

####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5천만원 미만

1) 향타기 및 향발기

2)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5. 10.(화) 09:00 ~ 5. 13.(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가격제안 최저가 :  $6,000,000 \times 87.745\% = 5,264,700$ 원 VAT포함)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5. 17.(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2개 업체만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5. 20.(금)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5. 25.(수)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

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li> <li>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li> <li>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li> <li>4. 서약서 1부 [서식4]</li> </ol>	수수료  없음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b>총 계</b>	<b>100</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5%;">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35%;">5천만원 미만</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점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 70점, A기관 : 65점, B기관 : 65점, D기관 : 60점
-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3. 배점기준

구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비고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배점 = 총계 X 배점률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span style="color: red;">※부가세포함</span>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